



세법연구 21-02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세법연구 21-02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세법연구 21-02

www.kipf.re.kr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2021. 9

| 권성준 · 송은주 · 허윤영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2021. 9

| 권성준 · 송은주 · 허윤영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권 성 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책임연구원

허 윤 영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11
1.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1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11
나. 개인	18
다. 법인	24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27
마.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요약	28
2. 기부금 신고 현황	29
가. 기부금 지출 규모	29
나. 개인	32
다. 법인	40
III.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8
1. 미국	48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48
나. 개인	51
다. 법인	60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63

2. 일본	64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64
나. 개인	68
다. 법인	73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76
3. 프랑스	78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78
나. 개인	79
다. 법인	82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85
4. 캐나다	86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86
나. 개인	90
다. 법인	100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101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3
1. 국제비교	103
가. 개인	103
나. 법인	111
2. 시사점	119
가.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 검토	119
나.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 관련 규정 개선	126
다. 법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	129
참고문헌	136

표 목차

〈표 II-1〉 법정기부금의 범위	13
〈표 II-2〉 지정기부금의 범위	15
〈표 II-3〉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28
〈표 II-4〉 연도별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 현황	30
〈표 II-5〉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신고 현황	33
〈표 II-6〉 연도별·기부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34
〈표 II-7〉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2019년)	36
〈표 II-8〉 연도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	37
〈표 II-9〉 종합소득 규모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2019년)	39
〈표 II-10〉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41
〈표 II-11〉 연도별·기부금 유형별 법인기부금 지출 현황	43
〈표 II-12〉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44
〈표 II-13〉 연도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45
〈표 II-14〉 자산 규모별 기부금 지출금액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2018년)	46
〈표 III-1〉 미국의 개인기부 공제한도	53
〈표 III-2〉 일본의 개인 및 법인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범위 비교	68
〈표 III-3〉 일본의 개인기부금 유형별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70
〈표 III-4〉 캐나다의 개인 적격기부금 한도	91
〈표 III-5〉 캐나다의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율	93
〈표 III-6〉 캐나다의 현물기부 유형별 기부금 평가방법	97

〈표 IV-1〉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105
〈표 IV-2〉 주요국의 개인 현물기부 기부가액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비교	108
〈표 IV-3〉 주요국의 개인 용역기부 조세지원제도 비교	110
〈표 IV-4〉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비교	110
〈표 IV-5〉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비교	112
〈표 IV-6〉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공제한도액 계산 기준 비교	114
〈표 IV-7〉 주요국의 법인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비교	116
〈표 IV-8〉 주요국의 법인 용역기부 조세지원제도 비교	118
〈표 IV-9〉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비교	119
〈표 IV-10〉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감면세액 비교	121
〈표 IV-11〉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유형별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비교	123
〈표 IV-12〉 주요국의 개인 및 법인기부금 공제방법 비교	125
〈표 IV-13〉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 관련 규정	127

그림 목차

[그림 II-1] 개인 및 법인의 연도별 GDP 대비 기부금 규모	31
[그림 II-2]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 비교	32
[그림 II-3] 기부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비중(2019년)	35
[그림 II-4]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추이	41

I. 서론

- 우리나라는 세법상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정부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부자가 부담하는 기부비용을 낮춤으로써 기부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부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부금을 통한 비영리활동이 공공부문이 미처 지원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의 보존 등 공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의 COVID-19 발생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통한 민간 비영리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음

-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기부자의 기부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는 조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부금 조세지원방식과 지원 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부자인 개인과 법인 측면에서 현금기부뿐만 아니라 현물기부 및 용역기부의 다양한 기부형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중 공익을 위한 자선기부에 한정하여 조사함
 - 기부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세지원제도를 국가별로 비교함

- 조사대상 국가는 개인기부금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소득공제방식인 미국, 일본과 세액공제방식인 캐나다, 프랑스임

- 본 보고서는 서론인 제 I 장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및 기부금 신고 현황을 살펴봄
 - 제 III 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함
 -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를 개인과 법인 측면에서 비교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1. 기부금 조세지원제도¹⁾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 세법상 기부금이란 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임²⁾
 - 세법상의 기부금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을 의미함³⁾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됨
 - 2020년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에서 종전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으나 기부금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 전 세법에서 사용하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있지만, 이는 세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일반적인 공익 목적의 기부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1)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및 개인기부금 과세제도는 권성준·송은주·김효림(2020)을 참조함

2)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1)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며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적용됨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학교 등⁵⁾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⁶⁾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5) 학교 등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임
- 6)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⑤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⑥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⑦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표 II-1〉 법정기부금의 범위

구분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함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함 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함 ²⁾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②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④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⑦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⑧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④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⑥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⑦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표 II-1〉의 계속

구분	내용
	⑧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⑪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⑫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간: 2017. 1. 1. ~ 2022. 12. 31) ②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지정기간: 2017. 1. 1. ~ 2022. 12. 31)

주: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자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2021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021. 3. 31.

- 개인의 경우 상기의 법정기부금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에 포함하고 있음⁷⁾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적용됨⁸⁾
-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세법상 지정하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품

7)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

8)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⁹⁾

〈표 II-2〉 지정기부금의 범위

구분	내용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¹⁾ 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⑥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①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②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²⁾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³⁾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표 II-2〉의 계속

구분	내용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⑫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주: 1)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의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보건의업은 제외)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2)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 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은 제외

3) 비영리법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은 제외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2021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021. 3. 31.

- 개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① 단체회비 ②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③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포함함¹⁰⁾
 - 노동조합·교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요건¹¹⁾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함

- 공익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¹²⁾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¹³⁾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1) 요건: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②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③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④ 금전으로 신탁할 것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13)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¹⁴⁾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② ①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③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①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개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이 지출한 「소득세법」상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기부금¹⁵⁾을 지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각 기부금의 산입한도액은

14)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다음과 같음¹⁶⁾

-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임¹⁷⁾
 -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임
-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¹⁸⁾) × 10% + 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 × 30%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①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③ 지정기부금의 순서대로 정해진 한도 금액 범위에서 공제함
-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포함)가 해당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¹⁹⁾
 - 2014년 1월 1일 법 개정에 의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었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였음
 - 법 개정 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4년 12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소득자

15)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7)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8) 기부금등 합계액이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임

19)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해설」, http://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2-20&jo=59.4&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1. 5. 18.

등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를 201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였음

-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기부금은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함
 - 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함

-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내의 기부금 합계액에서 사업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임²⁰⁾
 - 기부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함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모두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함
 - 법정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100%이고,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²¹⁾) × 10% + 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 합계액) × 30%

20)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1년 귀속연도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21) 기부금등 합계액이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임

2) 현물기부

가) 기부가액의 평가

- 현물기부도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에 포함됨
 - 세법에서는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기부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세제적격 현물기부를 판단할 때 물품의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²²⁾
 - 즉 기부물품의 가액은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장부가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임

- 「소득세법」상의 기부물품 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가액 산정에 차이가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 2. 11. 개정)을 통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기부물품의 평가방법이 동일하게 개정되었음
 - 따라서 현재는 기부받는 단체에 관계없이 기부물품의 기부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에 기증하는 경우, 기부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²³⁾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이 경우 기부금에는 포함하지 않음²⁴⁾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기부하는 자산이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인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기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²⁵⁾

3) 용역기부

- 세법상 용역 제공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할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이 있으며,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²⁶⁾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25) 「소득세법」 제88조

26)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과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 직접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함

-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의료업자가 무료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을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자의 수입으로 산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²⁷⁾

4) 이월공제

- 한도초과로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함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²⁸⁾
 -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기부금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지정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²⁹⁾

5) 기부장려금제도

-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 등이 기부한 단체에

27) 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306, 2012. 4. 29.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8) 「소득세법」 제34조 제5항

29)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직접 지급하는 기부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³⁰⁾

- 이는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단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6년에 도입하였음
-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다음의 지정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
 - 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
 -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다. 법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계산 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감면 혜택이 있음³¹⁾
-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따라 각각 손금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처리함

30) 국세청, 「기부장려금제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95&cntntsId=7758>, 검색일자: 2021. 6. 27.

31)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임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된 법정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를 적용함

2) 현물기부

가) 기부가액의 평가

- 법인이 지출하는 현물기부도 조세지원 대상임
 -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즉 법인이 지출하는 현물기부가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기부인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기부가액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³²⁾
 -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기부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함³³⁾
 - 상기 외의 기부금은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가액으로 함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3) 2011. 3. 31. 이전에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음(삼일아이닷컴,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해설」, http://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55-20&jo=24&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1. 6. 28.)

- 즉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 기부가액이 됨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비처리가 가능함
- 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는 포함하지 않음³⁴⁾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됨³⁵⁾³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외 모든 법인은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가짐
- 법인의 기부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인이 법정기부금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기부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하므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됨

34)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의2

35) 삼일아이닷컴,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의 해설」, http://www.samili.com/tax/jomunhaesul/explain_tax.asp?code=55-20&jo=4&treejo=0#content_body, 검색일자: 2021. 7. 22.

36) 이는 2001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특별부가세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과세대상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3) 이월공제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³⁷⁾
-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함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에 대하여 모두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공제한도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 법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각각 소득금액의 50%, 10% (사회적기업 20%)임
 -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각각 소득금액의 100%,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임
-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 평가에서 개인은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하는 한편 법인은 법정기부금은 장부가로 하고, 지정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 또는 장부가를 적용함
 - 현물기부 시 양도차익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가 아닌 지정기부금은 비과세,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은 시가 평가 시 과세될 수 있음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0년임

37)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우리나라주조합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할 수 없음

마.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요약

□ <표 II-3>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요약함

<표 II-3>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구분	개인		법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공제방법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해당 없음	해당없음
공제 한도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 10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현물 기부	기부가액 평가	Max[시가, 장부가액]	Max[시가, 장부가액]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비과세	
용역 기부	인정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 용역	
	기부가액 평가	봉사일수 × 5만원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이월공제 기간	10년		10년
기부장려금제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신청 가능	-	-

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종합소득신고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기부금 신고 현황

가. 기부금 지출 규모

- <표 II-4>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살펴 본 국내 기부금 총규모는 지난 2010년 이후로 연평균 3.6%씩 증가하여 2018년 14조 57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0년 10조 5,976억원 대비 32.6% 증가한 수준임
- 기부는 크게 개인과 기업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개인을 중심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도 전체 기부금 중 개인기부금 8조 7,694억원, 법인기부금 5조 2,876억 원으로 총기부금액에서 각각 62.4%, 3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3.8%, 3.3%로 개인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한편 개인 중 근로소득자가 2018년 5조 9,864억원, 종합소득자가 2조 7,830억 원으로 각각 42.6%, 1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동 기부금 규모는 공제대상이 아닌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등을 비롯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기부금 지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³⁸⁾

38) 우리나라의 개인 및 법인기부금의 지출 규모에 대하여 정확히 집계된 자료는 없음

〈표 II-4〉 연도별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개인			법인	총기부금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소계	금액	
2010	48,556	16,740	65,296	40,680	105,976
	(45.8)	(15.8)	(61.6)	(38.4)	(100.0)
2011	51,850	19,017	70,867	41,123	111,990
	(46.3)	(17.0)	(63.3)	(36.7)	(100.0)
2012	55,410	21,862	77,272	46,545	123,817
	(44.8)	(17.7)	(62.4)	(37.6)	(100.0)
2013	55,842	22,472	78,314	49,063	127,377
	(43.8)	(17.6)	(61.5)	(38.5)	(100.0)
2014	43,724	25,708	69,432	47,782	117,214
	(37.3)	(21.9)	(59.2)	(40.8)	(100.0)
2015	51,155	25,245	76,400	46,472	122,872
	(41.6)	(20.5)	(62.2)	(37.8)	(100.0)
2016	55,066	25,873	80,939	46,323	127,262
	(43.3)	(20.3)	(63.6)	(36.4)	(100.0)
2017	57,262	25,399	82,661	50,963	133,624
	(42.9)	(19.0)	(61.9)	(38.1)	(100.0)
2018	59,864	27,830	87,694	52,876	140,570
	(42.6)	(19.8)	(62.4)	(37.6)	(100.0)
연평균증가율 (2010~2018)	2.7	6.6	3.8	3.3	3.6

주: 1. () 안은 총기부금 대비 소득유형별 비중임

2. 개인 및 법인 모두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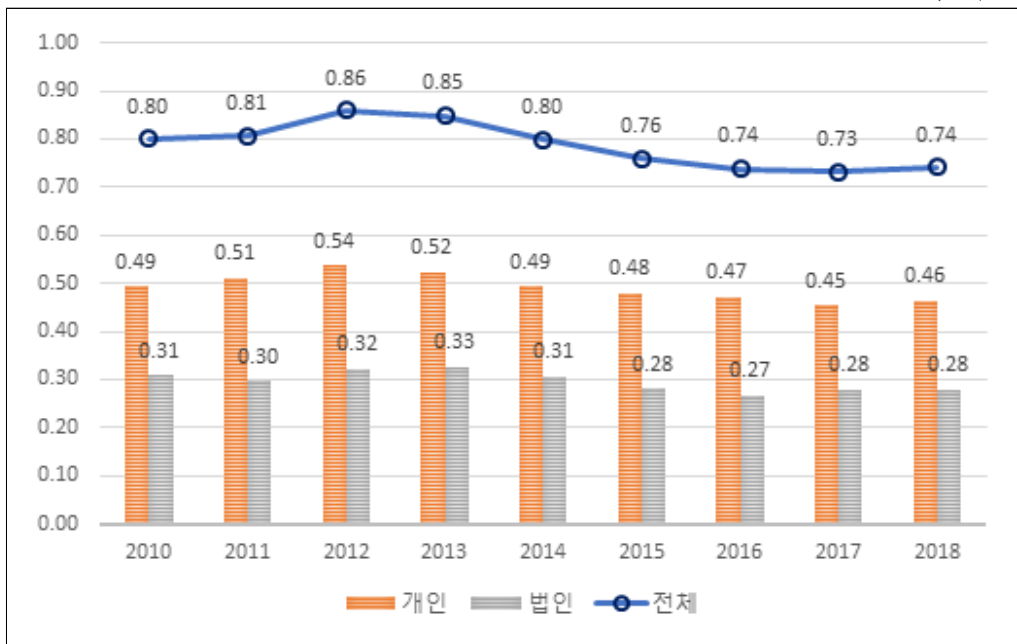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2-7 기부금 신고 현황」;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II-1]의 개인 및 법인의 연도별 GDP 대비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0년 0.80%에서 2012년 0.86%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0.74% 수준을 보임

- 2018년 국내 기부금은 총 14조 570억원으로 GDP 대비 0.74% 수준이며, 개인 기부금이 8조 7,694억원으로 GDP 대비 0.46%, 법인기부금이 5조 2,876억원으로 GDP 대비 0.28%로 나타남

[그림 II-1] 개인 및 법인의 연도별 GDP 대비 기부금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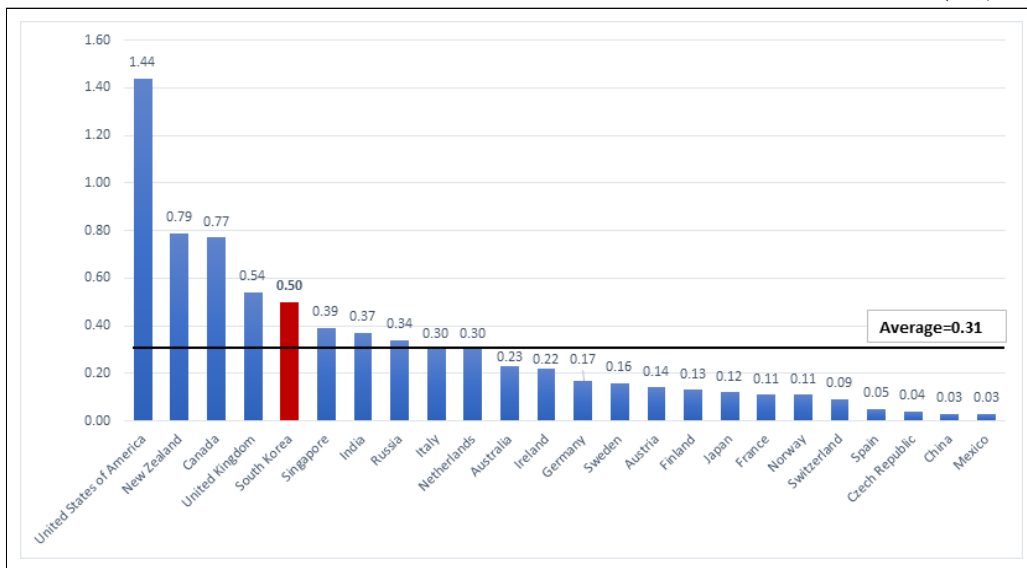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2-7 기부금 신고 현황」;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명목, 원화표시)」, <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6. 16.

- [그림 II-2]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0.5%로 조사대상 24개국 중 5위로 나타남
-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는 미국이 1.44%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각각 0.79%, 0.77%로 나타남
 - 멕시코가 0.03%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조사대상 24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 평균은 0.31%임
 - 일본과 프랑스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는 각각 0.12%, 0.11%로 조사대상국 중 17위와 18위를 차지함

[그림 II-2]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 비교

(단위: %)



주: 조사대상 연도는 국가별로 2011~2014년의 분포를 보임
 자료: Charities Aid Foundation, *Gross Domestic Philanthropy: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GDP tax and giving*, 2016, p. 12.

나. 개인

1) 근로소득자

- <표 II-5>의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근로소득자 중 약 530만명이 기부금으로 약 6조 2,665억원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118만원 정도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부금 신고인원 수는 2010년 약 412만명에서 2019년 약 530만명으로 28.7% 증가하였고, 기부금액은 2010년 약 4조 8,555억원에서 약 6조 2,665억원으로 29.1%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기부금은 지난 10년간 120만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약 118만원으로 2018년 120만원 대비 2만원 감소함
 - 급여총계 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10년 이후로 연평균 3.6%씩 감소하여 2019년에는 0.87%로 2010년 1.21% 대비 0.34%p 감소하였음
- 기부금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도에는 1인당 평균기부금은 2013년 약 113만원 대비 115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급여 대비 기부금 비율과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음
- 총급여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14년 0.96%로 2013년 1.11% 대비 0.15%p,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도 2014년 26.9%로 2013년 30.1% 대비 3.21%p 감소하였음

〈표 II-5〉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급여총계		기부금		1인당 평균기부금 (D/C)	총급여 대비 기부금 비율 (D/B)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 (C/A)
	신고인원 (A)	금액 (B)	공제인원 (C)	금액 (D)			
2010	15,176,782	401,086,049	4,118,176	4,855,563	1.18	1.21	27.1
2011	15,540,057	437,838,449	4,428,337	5,184,963	1.17	1.18	28.5
2012	15,768,083	470,771,597	4,709,343	5,541,012	1.18	1.18	29.9
2013	16,359,770	502,944,232	4,923,854	5,584,169	1.13	1.11	30.1
2014	16,687,079	533,726,860	4,487,042	5,147,090	1.15	0.96	26.9
2015	17,333,394	566,729,049	4,514,649	5,408,347	1.20	0.95	26.0
2016	17,740,098	600,099,695	4,634,892	5,633,994	1.22	0.94	26.1
2017	18,005,534	637,616,487	4,818,794	5,781,531	1.20	0.91	26.8
2018	18,577,885	681,611,264	5,017,598	6,006,861	1.20	0.88	27.0
2019	19,167,273	721,686,447	5,302,056	6,266,577	1.18	0.87	27.7
연평균 증감률 (2010~ 2019)	2.6	6.7	2.8	2.9	0.03	-3.6	0.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총괄)」,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총급여 대비 기부금 비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6%씩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I-6>과 [그림 II-3]의 기부 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세액 규모가 2019년 총공제세액 9,883억원 중 65.6%인 6,48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법정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비중은 각각 4.8%와 27.7%로 32.5%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
- 2019년 기준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공제세액은 37만 8,372원으로 나타남

〈표 II-6〉 연도별·기부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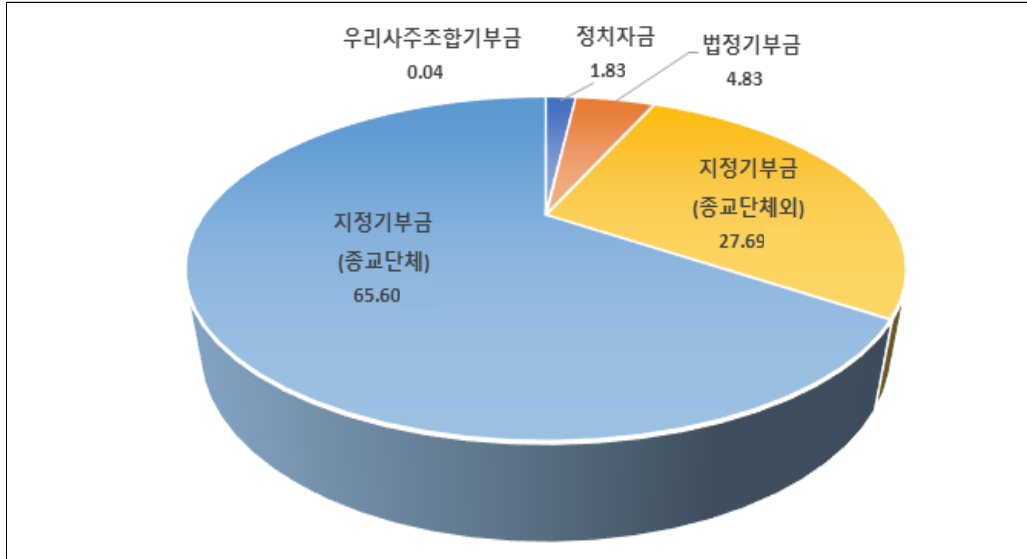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법정기부금	인원	2,034,832	1,938,703	1,987,575
	공제세액	50,320	50,297	47,723
	1인당 공제세액	24,729	25,944	24,011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인원	3,598,055	3,793,622	4,041,099
	공제세액	234,211	255,591	273,701
	1인당 공제세액	65,094	67,374	67,729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인원	1,574,391	1,632,314	1,713,651
	공제세액	576,955	601,318	648,398
	1인당 공제세액	366,462	368,384	378,372
정치자금 기부금	인원	274,667	260,080	201,900
	공제세액	26,008	25,396	18,129
	1인당 공제세액	94,689	97,647	89,79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인원	3,896	4,709	4,987
	공제세액	354	347	412
	1인당 공제세액	90,862	73,689	82,615
계	인원 ¹⁾	4,802,115	5,011,068	5,299,579
	공제세액	887,848	932,949	988,363
	1인당 공제세액	184,887	186,178	186,498

주: 1) 기부금 공제대상 특별세액공제 신고인원 수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7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3] 기부유형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비중(2019년)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7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I-7>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부금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기부금이 높게 나타남
 - 평균기부금은 2019년 과세대상 근로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이 약 1,38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연말정산 신고인원 1만 2,247명 중 68.5%인 8,392명의 근로소득자가 약 1,163억원을 기부하고 있는바, 이는 전체 공제인원과 전체 기부금액 중 각각 0.2%,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급여 총계 대비 기부금 비율은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 1.47%로 가장 높고, 1천만원 이하 구간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구간이 82.2%로 가장 높고, 1천만원 이하 구간이 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1-7〉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2019년)

(단위: 명, 백만원,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규모별	급여총계		기부금		1인당 평균 기부금 (D/C)	급여총계 대비 기부금 비율 (D/B)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 (C/A)
	인원 (A)	금액 (B)	공제인원 (C)	공제대상 금액 (D)			
1천만 이하	2,983,106 (15.6)	14,414,825 (2.0)	4,798 (0.1)	622 (0.0)	0.13	0.00	0.2
2천만 이하	2,983,208 (15.6)	45,671,624 (6.3)	52,113 (1.0)	16,051 (0.3)	0.31	0.04	1.7
4천만 이하	6,943,689 (36.2)	197,891,975 (27.4)	1,176,169 (22.2)	634,593 (10.1)	0.54	0.32	16.9
6천만 이하	2,965,885 (15.5)	145,568,616 (20.2)	1,504,355 (28.4)	1,322,509 (21.1)	0.88	0.91	50.7
8천만 이하	1,575,979 (8.2)	109,621,536 (15.2)	1,171,829 (22.1)	1,443,830 (23.0)	1.23	1.32	74.4
1억 이하	863,500 (4.5)	76,887,816 (10.7)	706,323 (13.3)	1,130,931 (18.0)	1.60	1.47	81.8
2억 이하	754,109 (3.9)	96,174,592 (13.3)	619,652 (11.7)	1,341,396 (21.4)	2.16	1.39	82.2
3억 이하	60,188 (0.3)	14,379,172 (2.0)	41,425 (0.8)	160,019 (2.6)	3.86	1.11	68.8
5억 이하	25,362 (0.1)	9,479,696 (1.3)	17,000 (0.3)	100,297 (1.6)	5.90	1.06	67.0
5억 초과	12,247 (0.1)	11,596,595 (1.6)	8,392 (0.2)	116,331 (1.9)	13.86	1.00	68.5
계	19,167,273 (100.0)	721,686,447 (100.0)	5,302,056 (100.0)	6,266,579 (100.0)	1.18	0.87	27.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201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종합소득자

- <표 II-8> 연도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종합소득자 기부 규모는 약 94만명이 약 2조 9,456억원을 지출하여 1인당 평균 311만원 정도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부자 수는 2010년 약 64만명에서 2019년 약 94만명으로 47.1% 증가하였고, 기부금액은 2010년 약 1조 6,739억원에서 약 2조 9,456억원으로 76.0%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기부금은 2014년 이후로 300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총수입금액 금액 대비 기부금액 비율은 2010년 이후로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2019년에는 0.26%로 2010년 0.22% 대비 0.04%p 증가하였음
-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대비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은 2019년도 12.7%로 2010년도 17.0%에 비해 약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8> 연도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총수입금액		기부금		1인당 평균기부금 (D/C)	총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 (D/B)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 (C/A)
	인원 (A)	금액 (B)	공제인원 (C)	금액 (D)			
2010	3,785,248	752,289,450	643,969	1,673,999	2.60	0.22	17.0
2011	3,956,702	826,428,055	689,252	1,901,707	2.76	0.23	17.4
2012	4,352,929	848,926,117	886,617	2,186,211	2.47	0.26	20.4
2013	4,564,682	870,863,127	879,216	2,247,192	2.56	0.26	19.3
2014	5,052,552	899,294,254	821,210	2,570,758	3.13	0.29	16.3
2015	5,482,678	944,510,355	783,982	2,524,481	3.22	0.27	14.3

〈표 II-8〉의 계속

연도	총수입금액		기부금		1인당 평균기부금 (D/C)	총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 (D/B)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 (C/A)
	인원 (A)	금액 (B)	공제인원 (C)	금액 (D)			
2016	5,874,671	1,001,123,659	715,260	2,587,321	3.62	0.26	12.2
2017	6,393,891	1,058,986,828	788,527	2,539,862	3.22	0.24	12.3
2018	6,911,088	1,099,426,895	856,865	2,782,955	3.25	0.25	12.4
2019	7,469,635	1,141,434,245	947,218	2,945,660	3.11	0.26	12.7
연평균 증감률 (2010~2019)	7.8	4.7	4.4	6.5	2.0	1.7	-3.2

주: 1. 기부금의 인원 및 금액은 종합소득 신고자의 기부금특별소득공제 + 필요경비 + 기부금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인원 및 금액의 단순합산임

2. 기부금 신고인원은 기부금특별소득공제 인원, 필요경비 손금산입 인원, 기부금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인원을 단순 합산하여 중복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2-1 주요항목 신고 현황, 3-2-7 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I-9〉의 종합소득 규모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종합소득 5억 초과 2만 9,968명 중 59.2%인 1만 7,753명의 개인이 약 5,306억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전체 공제인원 중 1.9%를 차지하고 있는 동 구간의 종합소득자가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임

〈표 II-9〉 종합소득 규모별 종합소득자 기부금 신고 현황(2019년)

(단위: 명, 백만원, %)

종합소득 규모별	총수입금액		기부금		1인당 평균 기부금 (D/C)	총수입 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 (D/B)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 (C/A)
	인원 (A)	금액 (B)	공제인원 (C)	금액 (D)			
1천만 이하	3,211,077 (43.0)	155,461,919 (13.6)	64,994 (6.9)	112,833 (3.8)	1.74	0.07	2.0
2천만 이하	1,656,547 (22.2)	138,050,376 (12.1)	122,304 (12.9)	173,842 (5.9)	1.42	0.13	7.4
4천만 이하	1,318,486 (17.7)	210,042,351 (18.4)	234,732 (24.8)	489,488 (16.6)	2.09	0.23	17.8
6천만 이하	485,350 (6.5)	134,817,324 (11.8)	146,853 (15.5)	306,531 (10.4)	2.09	0.23	30.3
8천만 이하	258,761 (3.5)	92,653,113 (8.1)	106,103 (11.2)	253,746 (8.6)	2.39	0.27	41.0
1억 이하	155,770 (2.1)	66,754,655 (5.8)	72,743 (7.7)	204,114 (6.9)	2.81	0.31	46.7
2억 이하	253,421 (3.4)	147,575,926 (12.9)	127,525 (13.5)	488,189 (16.6)	3.83	0.33	50.3
3억 이하	61,784 (0.8)	56,210,859 (4.9)	32,732 (3.5)	192,910 (6.5)	5.89	0.34	53.0
5억 이하	38,471 (0.5)	48,806,159 (4.3)	21,479 (2.3)	193,338 (6.6)	9.00	0.40	55.8
5억 초과	29,968 (0.4)	91,061,564 (8.0)	17,753 (1.9)	530,669 (18.0)	29.89	0.58	59.2
계	7,469,635 (100.0)	1,141,434,246 (100.0)	947,218 (100.0)	2,945,660 (100.0)	3.11	0.26	12.7

주: 1. 기부금의 인원 및 금액은 종합소득 신고자의 기부금특별소득공제 + 필요경비 + 기부금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인원 및 금액의 단순합산임
 2. 기부금 신고인원은 기부금특별소득공제 인원, 필요경비 손금산입 인원, 기부금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인원을 단순 합산하여 중복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3.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II」; 「3-2-7 기부금 신고 현황」, 201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다만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인원은 기부금특별소득 공제 인원, 필요경비 손금산입 인원, 기부금특별세액공제 인원을 단순합산하여 중복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표 II-8> 및 <표 II-9>의 1인당 평균기부금과 기부금 신고인원 비율의 실제 수치는 표에서 제시된 금액 및 인원보다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일 수 있음

다. 법인

- <표 II-10>의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을 살펴 보면, 2010~2018년 동안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는 연평균 3.3%씩 증가하여 2018년 약 5조 2,87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 지출을 법인세 신고법인 수로 나눈 기업당 기부금은 약 67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 법인세 신고법인의 수는 연평균 6.9%씩 증가하였으나 기부금 지출 규모는 동 기간 동안 연평균 3.3%씩 증가하는 데 그쳐 기업당 기부금은 2010년 약 880만원에서 2018년 약 670만원으로 연평균 3.4%씩 감소하였음
 - 다만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제공하고 있으나, 기부금을 신고한 법인의 수는 제공되지 않아 기부법인당 기부금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2018년 기준 78만 7,43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0년 46만 614개에서 71.0% 증가한 수준임
- 기부금액은 2018년 기준 5조 2,876억원으로 이는 2010년 4조 680억원에서 30.0% 증가한 수준임

〈표 II-10〉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귀속연도 ¹⁾	법인세 신고법인 수(A)		기부금(B)		법인당 기부금(B/A) ²⁾	
	법인 수	전년 대비 증감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율
2010	460,614	-	4,068,045	-	8.8	-
2011	482,574	4.8	4,112,276	1.1	8.5	-3.5
2012	517,805	7.3	4,654,495	13.2	9.0	5.5
2013	550,472	6.3	4,906,292	5.4	8.9	-0.8
2014	591,694	7.5	4,778,202	-2.6	8.1	-9.4
2015	645,061	9.0	4,647,156	-2.7	7.2	-10.8
2016	695,445	7.8	4,632,262	-0.3	6.7	-7.5
2017	740,215	6.4	5,096,288	10.0	6.9	3.4
2018	787,438	6.4	5,287,634	3.8	6.7	-2.5
연평균 증감률 (2010~2018)	6.9		3.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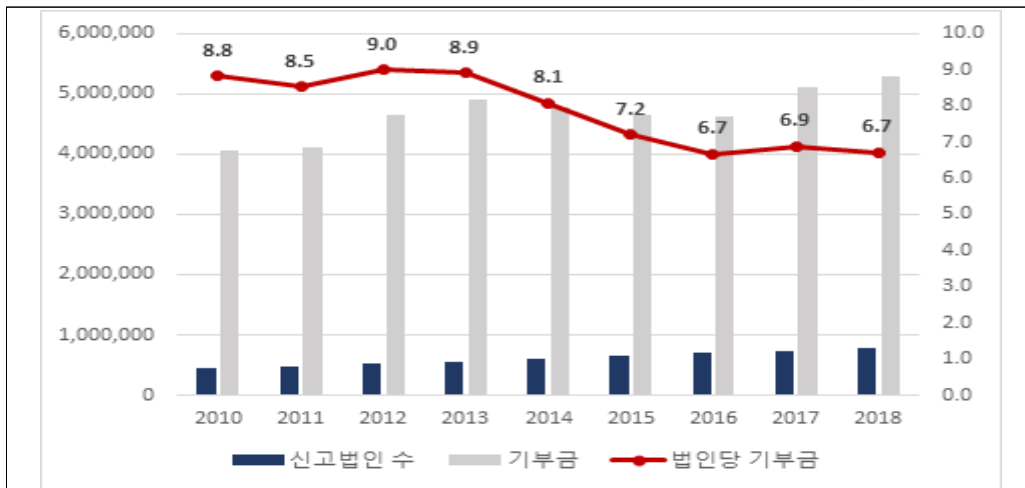
주: 1) 귀속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 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금액임

2) 법인당 기부금 = 기부금/법인세 신고법인 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4] 연도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추이

(단위: 개, 백만원)



주: 1. 귀속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 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금액임

2. 법인당 기부금 = 기부금/법인세 신고법인 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I-11>에서 기부금 유형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인 기부금의 지출 유형은 최근 10년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귀속연도 기준 법인기부금 총지출금액은 총 5조 2,876억원으로, 이 중 법정기부금이 1조 3,060억원, 지정기부금이 3조 9,815억원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비중은 2018년도의 경우 각각 24.7%, 75.3%로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현행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50%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제 지출금액은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법인기부금 유형별 지출금액에 대한 2009~2018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4.6%, 11.4%로 나타남
 - 2018년 법정기부금은 1조 3,060원으로 2009년 약 2조원 대비 34.8% 감소한 반면, 2018년도 지정기부금은 3조 9,815억원으로 2009년 1조 5,027억원 대비 165.0% 크게 증가하였음
 - 이는 2009년 이후로 법인기부금 손금한도액이 75%에서 50%로 축소되고, 2011년 이후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5%에서 10%로 확대된 바 있는 조세정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판단됨³⁹⁾

39) 참고로 2005년 이전에는 법정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함

〈표 II-11〉 연도별·기부금 유형별 법인기부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귀속연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계		
	기부금액	비중	전년 대비	기부금액	비중	전년 대비	기부금액	비중	전년 대비
2009	2,001,711	57.1	5.6	1,502,748	42.9	-4.0	3,504,459	100.0	1.3
2010	2,423,360	59.6	21.1	1,644,685	40.4	9.4	4,068,045	100.0	16.1
2011	1,473,145	35.8	-39.2	2,639,131	64.2	60.5	4,112,276	100.0	1.1
2012	1,784,892	38.3	21.2	2,869,602	61.7	8.7	4,654,494	100.0	13.2
2013	1,799,954	36.7	0.8	3,106,338	63.3	8.2	4,906,292	100.0	5.4
2014	2,023,522	42.3	12.4	2,754,680	57.7	-11.3	4,778,202	100.0	-2.6
2015	1,409,470	30.3	-30.3	3,237,686	69.7	17.5	4,647,156	100.0	-2.7
2016	1,250,184	27.0	-11.3	3,382,076	73.0	4.5	4,632,260	100.0	-0.3
2017	1,227,714	24.1	-1.8	3,868,575	75.9	14.4	5,096,289	100.0	10.0
2018	1,306,064	24.7	6.4	3,981,570	75.3	2.9	5,287,634	100.0	3.8
연평균 증감률 (2009~2018)	-4.6			11.4			4.7		

주: 귀속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 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 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법인기부금 지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II-12〉에서 연도별로 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지출비율은 2018년 0.1%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2018년 동안 수입금액과 기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8%, 3.3%임

〈표 II-12〉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

귀속연도	수입금액		기부금		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 (B/A)
	금액(A)	전년 대비 증감율	금액(B)	전년 대비 증감율	
2010	3,833,605,829	-	4,068,045	-	0.11
2011	4,212,172,614	9.9	4,112,276	1.1	0.10
2012	4,313,535,647	2.4	4,654,495	13.2	0.11
2013	4,323,587,926	0.2	4,906,292	5.4	0.11
2014	4,468,472,742	3.4	4,778,202	-2.6	0.11
2015	4,506,772,763	0.9	4,647,156	-2.7	0.10
2016	4,661,150,475	3.4	4,632,262	-0.3	0.10
2017	5,021,567,332	7.7	5,096,288	10.0	0.10
2018	5,160,465,434	2.8	5,287,634	3.8	0.10
연평균 증감률 (2010~2018)	3.8		3.3		-0.4

주: 귀속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 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사계상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2-1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기업 규모에 따른 기부금 지출을 분석하기 위해 〈표 II-13〉을 통해 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로 기부금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귀속연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중 0.5%(4,125개)를 차지하고 있는 1천억 초과 법인이 전체 법인기부금의 80.9%(약 4조 2,792억원)를 기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는 수입금액 규모가 큰 소수의 기업이 전체 기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한편 2018년 기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당 기부금은 20만원에 불과하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법인의 법인당 기부금은 약 10억 3,740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13〉 연도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귀속 연도	수입금액 규모별	신고법인		수입금액		기부금		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	법인당 기부금
		법인 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5	10억 이하	402,717	62.4	95,258,294	2.1	140,780	3.0	0.15	0.3
	100억 이하	204,149	31.6	657,580,661	14.6	283,890	6.1	0.04	1.4
	1,000억 이하	34,693	5.4	857,669,391	19.0	492,682	10.6	0.06	14.2
	1,000억 초과	3,502	0.5	2,896,264,417	64.3	3,729,804	80.3	0.13	1,065.0
	계	645,061	100.0	4,506,772,763	100.0	4,647,156	100.0	0.10	7.2
2016	10억 이하	439,611	63.2	101,813,263	2.2	114,906	2.5	0.11	0.3
	100억 이하	215,691	31.0	691,864,333	14.8	322,167	7.0	0.05	1.5
	1,000억 이하	36,475	5.2	908,959,790	19.5	482,718	10.4	0.05	13.2
	1,000억 초과	3,668	0.5	2,958,513,089	63.5	3,712,472	80.1	0.13	1,012.1
	계	695,445	100.0	4,661,150,475	100.0	4,632,263	100.0	0.10	6.7
2017	10억 이하	470,177	63.5	107,843,708	2.1	119,734	2.3	0.11	0.3
	100억 이하	226,883	30.7	728,492,602	14.5	342,228	6.7	0.05	1.5
	1,000억 이하	39,145	5.3	978,160,799	19.5	479,512	9.4	0.05	12.2
	1,000억 초과	4,010	0.5	3,207,070,223	63.9	4,154,814	81.5	0.13	1,036.1
	계	740,215	100.0	5,021,567,332	100.0	5,096,288	100.0	0.10	6.9
2018	10억 이하	506,973	64.4	115,091,390	2.2	123,353	2.3	0.11	0.2
	100억 이하	236,071	30.0	753,853,122	14.6	387,788	7.3	0.05	1.6
	1,000억 이하	40,269	5.1	1,008,084,033	19.5	497,324	9.4	0.05	12.4
	1,000억 초과	4,125	0.5	3,283,436,889	63.6	4,279,167	80.9	0.13	1,037.4
	계	787,438	100.0	5,160,465,434	100.0	5,287,632	100.0	0.10	6.7

주: 귀속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 신고서 주요 계정명세서상 회계상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2-1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지출비율은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음
 - 수입금액 대비 기부금 지출비율은 2015년 이후로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구간과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 규모가 큰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동 기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0.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표 II-14>의 자산 규모별 기부금 지출금액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 현황을 살펴보면,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 수는 2018년 기준 2만 5,145개이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조 2,932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이 중 자산 규모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기부금 지출금액은 2018년도 3조 9,213억원으로 전체 기부금 지출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2018년도 8,116억원으로 전체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4> 자산 규모별 기부금 지출금액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2018년)

(단위: 개, 백만원, %)

자산 규모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	기부금 지출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 수	금액
5억 이하	387,648	67,988	7,699	50,499
	(49.2)	(1.3)	(30.6)	(3.9)
10억 이하	113,208	45,338	3,471	20,995
	(14.4)	(0.9)	(13.8)	(1.6)
20억 이하	98,258	76,791	3,497	31,060
	(12.5)	(1.5)	(13.9)	(2.4)
50억 이하	91,728	134,836	3,956	49,229
	(11.6)	(2.6)	(15.7)	(3.8)
100억 이하	43,196	148,184	2,336	54,378
	(5.5)	(2.8)	(9.3)	(4.2)
200억 이하	21,607	121,580	1,469	36,571
	(2.7)	(2.3)	(5.8)	(2.8)

〈표 II-14〉의 계속

자산 규모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	기부금 지출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 수	금액
500억 이하	15,682	191,934	1,187	90,416
	(2.0)	(3.6)	(4.7)	(7.0)
1,000억 이하	7,360	155,719	589	47,407
	(0.9)	(2.9)	(2.3)	(3.7)
5,000억 이하	7,128	423,876	666	101,037
	(0.9)	(8.0)	(2.6)	(7.8)
5,000억 초과	1,623	3,921,389	275	811,619
	(0.2)	(74.2)	(1.1)	(62.8)
총계	787,438	5,287,634	25,145	1,293,211
	(100.0)	(100.0)	(100.0)	(100.0)

주: 1. 귀속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함

2. () 안은 총계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8-3-14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Ⅲ.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미국⁴⁰⁾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 미국은 자선기부(charitable contribution)에 대해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자선기부란 자격을 갖춘 조직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나 증여로서 자발적이며 동등한 가치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임⁴¹⁾

- 자선기부의 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공제가능한 기부금을 수령한 조직 유형과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공제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단체(Qualified Organizations)에는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또는 문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린이 또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가 포함됨

-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적격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유형의 조직이 적격단체에 해당됨⁴²⁾
 - 미국,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 소유지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

40)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및 개인기부금 과세제도는 권성준·송은주·김효립(2020)을 참조함

41)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2.

42)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2. 적격단체에 대해서는 IRC 170(c)에서 규정하고 있음

된 공동모금(community chest), 법인, 신탁, 기금(fund) 또는 재단(foundation)으로, 자선, 종교, 과학, 문학 또는 교육 목적 또는 어린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함

-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를 육성하는 특정 조직도 자격이 있음
- 미국 또는 그 소유지에서 조직된 참전용사 단체(보조조직, 신탁 또는 재단 포함)
- 롯지 시스템하에서 운영되는 국내 형제회(fraternal societies), 협회(associations)
 - 이 유형의 조직에 지출한 기부금은 자선, 종교, 과학, 문학 또는 교육 목적, 어린이 또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 특정 비영리 묘지회사(cemetery companies or corporations)
 - 이 유형의 조직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정 부지 등에 사용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음
- 미국 또는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소유(푸에르토리코 포함), 주 또는 미국 소유의 정치적 지역,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 또는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지역
 -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공제가능함

□ 적격단체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⁴³⁾

- 교회, 사원, 회당, 기타 종교 단체의 협회
- 미국적십자(American Red Cross) 및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와 같은 대부분의 비영리 자선단체
- 미국 보이스카우트, 미국 걸스카우트, 대학 및 박물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영리 교육 기관⁴⁴⁾
- 비영리 병원 및 의료연구기관
- 비영리 자원봉사 소방 회사
- 공공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영리단체
- 민방위조직

43)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3.

44) 기부금이 수업료 또는 기타 등록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 적격단체에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받은 혜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기부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⁴⁵⁾
 - 수취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정시장가치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자선기부가 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이 공제 요건을 갖추려면 기부를 할 의도로 지불한 것이어야 함
 -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 입장권에 65달러를 지불하였고 65달러 전액이 교회에 전달되며, 행사 입장권의 공정시장가치는 25달러인 경우 자선기부금은 40달러임
 - 즉 자선 이벤트, 자선 공연 및 기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적절한 조직에 공정시장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혜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만 기부금 공제 대상임

-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는 자선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없음⁴⁶⁾
 -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
 - 자격이 없는 조직에 대한 기부
 -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
 - 시간이나 용역의 가치
 - 시간이나 용역의 가치에는 적십자 등에 대한 헌혈과 적격단체에 무급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동안 상실한 소득의 가치를 포함함
 - 개인 경비
 - 개인은퇴계약(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으로부터의 적격한 자선 분배
 - 감정 수수료(appraisal fees)
 - 기부자 자문 기금에 대한 특정 기부
 - 재산에 대한 부분적 지분의 기부

45)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4.

46)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7.

나. 개인

1) 공제 방법 및 한도

- 현금기부에는 현금, 수표, 전자지금이체, 온라인 지불 서비스, 직불카드, 신용카드, 급여공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이체가 포함됨⁴⁷⁾
 - 현금기부의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보관하여야 함
 - 적격단체의 이름, 기부 날짜 및 기부 금액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
 - 단체의 이름, 기부 날짜 및 기부 금액이 표시된 적격기관의 영수증이나 기타 서면 기록
 - 급여 공제 기록

- 개인의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단체는 적격단체(50% limit organization)와 그 외 적격단체(Second category of qualified organization)로 구분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함
 - 적격단체는 현금기부에 대해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의 50% 공제한도를 원칙으로 함⁴⁸⁾
 - 적격단체에는 교회 및 교회협회, 정규교직원과 정규과정이 있는 교육기관, 병원 및 병원과 연계된 의료연구기관, 재산을 수령·보유·투자 및 관리하고 국공립 대학에 지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체, 연방정부·주정부·지역구 등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자선단체, 공개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지만 기부자 수에 제한이 없고 일반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등의 테스트를 충족하는 단체, 민간운영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s) 등이 있음
 - 그 외 적격단체는 현금기부에 대해 조정총소득의 30%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

47)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20.

48)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p. 14~15.

- 적격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적용함⁴⁹⁾
 - 현금기부에 대한 공제한도는 원래 50%였으나,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2018. 1. 1.부터 2025. 12. 31. 기간 동안에는 조정총소득의 60%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함
 - 적격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기부는 30%의 한도가 적용됨
 -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2020연도에 적절한 현금기부를 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조정총소득에서 다른 기부금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적용함(이를 ‘qualified cash contribution for 2020’이라 함)⁵⁰⁾
 - 이는 2019년 12월 31일 이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된 자선기부금으로 적격단체(50% 공제 단체)에 지출되었고 납세자가 100% 공제한도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됨
 - 동 규정은 2021년까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음⁵¹⁾
 - 비현금기부에 대해서는 조정총소득⁵²⁾의 50%를 공제한도로 함
 -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하고 공정시장가치(FMV)로 공제할 때에는 30%의 한도를 적용함
 - 적격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현물기부는 20% 또는 30%의 공제한도가 적용됨
- 그 외 적격단체에 대한 현금기부 및 비현금기부(자본이득자산 제외)는 조정총소득의 30%의 한도를 적용함
 -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거나 적격단체가 사용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조정총소득의 20%의 한도를 적용함

49)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p. 15~16.

50)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5.

51) Stanford Giving, “Charitable giving in 2021: extension of benefits under the CARES Act,” <https://giving.stanford.edu/stories/cares-act-extension/>, 검색일자: 2021. 4. 15.

52) 현금기부가 있는 경우, 조정총소득에서 현금기부를 차감한 금액임

〈표 III-1〉 미국의 개인기부 공제한도

구분	적격단체	그 외 적격단체
현금기부	· 원칙: 조정총소득의 50% · 2018~2025년 기간: 조정총소득의 60% · 2020~2021년: 조정총소득의 100% (선택 시 적용)	· 원칙: 조정총소득의 30%
비현금기부	· 원칙: 조정총소득의 50% · 자본이득자산을 FMV로 공제 시: 조정총 소득의 30%	· 원칙: 조정총소득의 30% · 자본이득자산: 조정총소득의 20%

자료: 본문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다음의 기부에 대해서는 조정총소득의 100%를 한도로 함⁵³⁾
 - 적절한 농부 및 목장주가 지출한 적절한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
 - 적절한 농부 또는 목장주란 농업으로부터의 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이어야 함
 - 2018년 2019년에 적격 재해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위한 기부
- 일반적으로 자선기부금을 공제하려면 소득세 신고(Form 1040) 시 항목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첨부서류인 Schedule A에 의해 청구함
 - 미국은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표준공제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항목별공제는 지출 항목별로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공제를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항목별 공제액이 표준공제액보다 큰 경우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표준공제 적용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도입되었음⁵⁴⁾

53)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5.

- 종전에는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개인에 한해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개인이 지출한 현금기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최대 300달러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⁵⁴⁾
 - 이는 자선단체를 위한 임시규정임
 - 현금기부에는 수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이루어진 기부가 포함됨
 - 적절한 면세단체(tax exempt organization)에 한해 적용됨
- 공제한도 금액은 독신, 세대주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3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300달러, 부부별도신고의 경우 150달러임
 - 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에 기재하는 방식에 의해 청구함
 - 3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거나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유가증권, 가정용품 및 기타 재산에 의한 비현금성기부와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최근의 경기부양책인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의해 300달러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고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제액은 600달러로 인상함⁵⁶⁾

2) 현물기부⁵⁷⁾

가) 기부가액의 평가

□ 적격단체에 현물자산(property)을 기부하는 경우 자선기부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부

54) IRS, "Most taxpayers can deduct up to \$300 in charitable contributions without itemizing deductions," <https://www.irs.gov/newsroom/most-taxpayers-can-deduct-up-to-300-in-charitable-contributions-without-itemizing-deductions>, 검색일자: 2021. 6. 16.

55)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2.

56) Stanford Giving, "Charitable giving in 2021: extension of benefits under the CARES Act," <https://giving.stanford.edu/stories/cares-act-extension/>, 검색일자: 2021. 4. 15.

57)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p. 8~14.

시점의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임⁵⁸⁾

- 그러나 가치가 증가한 자산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기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정시장가치는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교환하는 가격임⁵⁹⁾
- 다음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치를 정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의류 또는 가정용품, 자동차·보트 또는 비행기, 박제자산(Taxidermy property), 부채가 있는 자산, 자산에 대한 부분적인 지분, 유형 개인자산에 대한 부분적 지분, 보존가치가 있는 자산(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 유형 개인자산에 대한 미래 지분, 자신의 사업에서의 재고, 특허 또는 기타 지적 자산
- 공정시장가치가 장부가보다 하락한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낮은 금액인 공정시장가치로 제한됨⁶⁰⁾
 - 즉 공제금액은 Min[장부가, 공정시장가치]을 의미함
 - 공정시장가치로 공제금액이 제한되므로 장부와 공정시장가치의 차이만큼은 공제를 청구할 수 없음
 -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의 일반적인 예로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임
 - 일반적으로 자산의 장부가는 매입 시 지불한 금액임
- 공정시장가치가 장부가보다 증가한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의 공제금액은 기부한 자산이 일반소득자산(ordinary income property)인지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인지에 따라 공제액 계산 규정이 차이가 있음⁶¹⁾
 - 일반소득자산이란 기부한 날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했다면 기부자가 일반소득이나 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임
 - 일반소득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재고, 기부자가 만든 예술작품, 기부자가 준비한

58)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8.

59)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1.

60)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2.

61)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2.

원고, 보유기간 1년 이하의 자본자산 등임

- 자본이득자산이란 기부한 날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했다면 장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임
 - 자본이득자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이 포함됨
 - 자본자산이란 개인적 목적이나 투자 목적의 자산을 의미하며, 주식, 채권, 보석류, 동전 또는 우표 수집품,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가구 등이 해당됨

- 일반소득자산의 기부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공정시장가치에서 자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할 이익(일반소득 또는 단기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임
 -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부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기부자산의 장부가임
 -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보유한 주식을 교회에 기부한 경우, 기부 당일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는 1천달러이고 장부가는 800달러였다면, 주식을 매각하면 200달러의 가치 상승이 단기자본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800달러로 제한됨

- 자본이득자산의 기부에 대한 공제액의 일반원칙은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임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에서 장기자본이득을 차감한 금액인 장부가를 공제하는 예외규정이 있음
 - 적격단체(50% 공제 단체)에 기부한 자본이득자산에 대해 30% 공제 한도 대신 50% 공제 한도를 선택한 경우
 - 자산(적격 평가 주식 제외)이 특정 민간비영리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s) 에 기부된 경우
 - 기부한 자산이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인 경우
 - 기부한 자산이 특정 박제 자산인 경우
 - 자선단체에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

- 적격단체에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분적으로는 자선기부이고 부분적으로는 판매 및 교환에 해당됨⁶²⁾
 - 자선기부 부분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산출됨
 - 1단계: 매각 당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수취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부한 부분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함
 - 2단계: 기부한 부분의 조정된 장부가를 산출함(전체 자산의 장부가×(기부한 부분의 공정시장가치/전체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 3단계: 자선기부 금액이 기부한 부분의 공정시장가치인지 기부한 부분의 조정된 장부가인지 판단함
 - 일반적으로 자선기부금의 금액은 매각된 자산이 자본이득자산인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치이고 일반소득자산인 경우에는 조정된 장부가임
 - (사례) 공정시장가치가 1만달러인 일반소득자산을 교회에 2천달러에 판매하였고 기부자의 장부가는 4천달러이며 조정총소득은 2만달러이고 연중 다른 기부금은 없는 경우
 - 기부한 부분의 공정시장가치: \$8,000(=\$10,000-\$2,000)
 - 기부한 부분의 장부가: \$3,200(\$4,000×(\$8,000÷\$10,000))
 - 일반소득자산이기 때문에 자선기부금 공제는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인 3,200달러임
- 기부된 자산의 가치 또는 장부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음⁶³⁾
 - 세금신고서에 청구한 자산의 가치 또는 장부가가 정확한 금액의 150% 이상이고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5천달러 이상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함
 - 과대계상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의 200% 이상이고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5천달러 이상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의 40%를 벌금으로 부과함

62) IRS,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p. 13~14.

63) IRS,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4.

□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요구됨⁶⁴⁾

- 가정용품은 500달러 이상 공제되는 경우 적격 감정평가서가 필요함
- 보석류의 경우 전문화된 보석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야 함
- 그림, 골동품 및 기타 예술품 기부에 대한 공제는 공제액이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격한 서면감정서가 요구됨

□ 적격보전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는 적격부동산의 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할 적격단체에 기부하는 것임

- 적격보전기부의 목적을 위한 적격단체란 ① 정부단위 ②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자선·종교·과학·문학·교육 등의 조직 ③ 정부단위 및 공개적으로 지원되는 자선 단체에 의해 통제되고 독점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임
- 기부는 다음의 보존 목적 중 하나를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함
 - 일반 대중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을 위한 토지 보존
 - 물고기, 야생동물, 식물 또는 이와 유사한 생태계의 자연적 서식지 보호
 - 공공 이익을 위하여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 열린 공간의 보존
 - 역사적으로 중요한 토지 또는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 1만달러를 초과하는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500달러의 수수료(filing fee)를 지불하여야 함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개인의 자본이득 산출 시 양도라 함은 자본자산의 매각, 자산의 다른 자산과의 교환, 비자발적 전환, 비과세 교환, 배우자에게 양도 등을 포함함⁶⁵⁾

- 현물자산의 기부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본이득 계산상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64) IRS, Publication 561, "Determin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pp. 4~8.

65) IRS,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2020, p. 2.

3) 용역기부

- 적격기관에 제공한 용역의 가치는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없음⁶⁶⁾
 - 그러나 적격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출한 용역제공자가 부담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음
 - 본인부담 비용을 공제하려면 해당 비용은 환급받지 않았어야 하고,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면서 개인적 생활비 또는 가족 비용이 아닌 지출이어야 함

4) 이월공제

- 조정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없는 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⁶⁷⁾
 - 일반적인 기부금의 초과분은 소진될 때까지 향후 5년까지 공제할 수 있음
 - 적격보존기부는 15년 동안 이월할 수 있음
- 이월된 기부금은 이월된 연도의 한도가 적용됨⁶⁸⁾
 - 예를 들어 20% 한도가 적용되는 기부금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연도의 20% 한도를 적용함
 - 2년 이상의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먼저 이월된 부분 먼저 사용함
 - (사례) 작년에 1만 1천달러를 50% 한도 조직에 현금으로 기부하였고 조정총소득의 60% 한도 적용 때문에 1만달러만 공제하고 1천달러를 올해로 이월한 경우
 - 올해 조정총소득은 2만달러이며, 9,500달러를 50% 한도 조직에 현금으로 기부하고 ‘qualified cash contribution for 2020’을 선택하지 않았음

66)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p. 5~6.

67)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9.

68)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p. 19.

- 조정총소득의 60% 한도는 올해의 기부금 9,500달러와 이월된 기부금 1천달러에 적용됨
- 총현금기부액 1만 500달러(9,500+1,000)는 공제한도액인 1만 2천달러(2만의 60%) 미만이므로 올해의 현금기부금과 이월 현금기부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음

다. 법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법인이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적격한 단체에 기부하는 자선기부금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⁶⁹⁾
 -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는 법인은 기부금을 지불한 해에 공제하고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는 법인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사회가 승인한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 수표 또는 기타 금전적 기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은행기록, 영수증, 서신, 조직의 이름과 기부 날짜 및 기부 금액이 명시된 수령자로부터의 서면 통신 등이 유효한 기록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법인이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부받은 단체로부터의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함
-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법인이 2020년 자선단체(public charity)에 지출한 현금기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소득의 25%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⁷⁰⁾

69) IRS, Publication 542(01/2019), "Corporation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42>, 검색일자: 2021. 4. 6.

70) 미국 국세청,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charitable-contribution-deductions>, 검색일자: 2021. 4. 15.

- 이는 최근의 경기부양책인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의해 공제한도 25%의 적용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였음⁷¹⁾

2) 현물기부

가) 기부가액의 평가

- 법인이 현금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의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 가치임
- 가격이 상승한 자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함⁷²⁾
 - 매각 시 일반소득 또는 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일반소득자산의 경우, 공제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일반소득 또는 단기자본이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됨
 - 따라서 공제금액은 장부가임
 - 매각 시 장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본이득자산의 경우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이므로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기부금 공제액에 포함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격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하였다면 실현되었을 이익을 제외한 금액, 즉 장부가만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 등과 유사한 자산을 기부
 - 유형 개인자산을 기부하고 자선단체가 이를 면세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
 -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일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에 사용한 경우
- 법인(S 법인 제외)은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 기부의 경우,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에 가치증가분의 50%를 합산한 금액과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71) Stanford Giving, "Charitable giving in 2021: extension of benefits under the CARES Act," <https://giving.stanford.edu/stories/cares-act-extension/>, 검색일자: 2021. 4. 15.

72)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2009, pp. 486~487.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⁷³⁾

- 특정 재고자산 및 기타자산이 기부받은 단체에 지원되고 환자, 빈곤층, 유아를 돌보는 데 사용되는 건강에 좋은 식품(apparently wholesome food)의 적격기부
- 법인(S법인, 개인지주회사, 개인용역법인 제외)이 건설하고 실질적인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기증한 과학용 자산으로, 해당 자산은 자격을 갖춘 조직에 기부되어야 하고 원래 용도인 미국 내에서의 물리 또는 생물학 분야의 연구 및 실험의 수행에 사용된 것이어야 함

□ 현물기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이 요구됨⁷⁴⁾

- 비공개 및 개인서비스 법인(closely held and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은 비현금기부에 대해 500달러 이상의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Form 8283(Noncash Charitable contribution)을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기업은 기부된 자산에 대해 청구된 공제액이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orm 8283을 작성하여 세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법인은 5천달러를 초과하여 공제를 청구한 자산에 대해 적격한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함
 - 현금, 상장증권, 재고 및 기부수령단체가 판매한 적격차량에 대해서는 적격한 평가가 요구되지 않음
- 공제액이 50만달러(기증된 예술 작품의 경우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세금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법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함

73) 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p. 13.

74) 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p. 13.

- 법인이 현금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부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기부가액으로 하므로 장부가와 공정시장가치의 차이가 법인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그러나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 중 일반소득자산은 일반적으로 장부가가 기부가액이 되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될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음
-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 중 자본이득자산은 공정시장가치로 기부가액을 평가하므로 양도차익이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이득자산 중 장부가로 기부가액을 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음
 - 자본이득자산 중 장부가로 기부가액을 평가하는 자산은 특허권 등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형 개인자산, 민간재단이 사용하는 자산 등임

3) 용역기부

- 법인의 용역기부에 대하여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4) 이월공제

- 당해 과세연도의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자선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초과분은 소멸됨
- 당해 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함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미국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소득세제상의 기부금 규정을 따르고 있음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부금 규정을 따르고 법인은 법인에 적용되는 기부금 규정을 따르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기부금 규정에 차이가 있음

-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제방법은 개인은 소득공제, 법인은 손금산입이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공제 방식임
 - 공제한도는 현금기부 기준으로 볼 때, 개인은 기부단체에 따라 조정총소득의 60% 또는 30%이고 법인은 과세소득의 10%임
 -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함
 - 원칙은 공정시장가치이나, 공정시장가치가 장부가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소득자산은 장부가를 적용하고 자본이득자산은 공정시장가치가 원칙이나 장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개인의 경우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기부자산은 자본이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의 경우에는 현물기부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될 수 있음
 - 용역기부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인정하지 않음
 -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

2. 일본⁷⁵⁾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 일본의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의 범위는 개인과 법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음

1) 개인

- 「소득세법」 제78조에서는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해 특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공제라고

75)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및 조세지원제도는 권성준·송은주·김효림(2020)을 참조함

규정하고 있음⁷⁶⁾

-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특정기부금에 한하여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됨
-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기부금이란 다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함⁷⁷⁾⁷⁸⁾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일반에게 널리 모집하고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부금
-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공공법인 중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그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⁷⁹⁾
- 특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 거주자가 주무대신의 증명을 받은 특정 공익신탁 중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인정 NPO 법인 등이란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 NPO 법인을 의미하며, 인증 유효기간 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적용함
 - 일반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76)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77) 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21. 6. 11.

78) 기부를 한 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정치자금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 등은 특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21. 6. 11.)

79)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
 - 개인이 정당, 정치자금단체, 특정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신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⁸⁰⁾
- 특정 공익증진법인은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 기여, 기타 공익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법인을 말함⁸¹⁾
- 독립행정법인
 -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
 - 자동차 안전운전센터, 일본 사법지원센터,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 및 일본 적십자사
 -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갱생보호법인

2) 법인

- 「법인세법」 제37조에서는 기부금을 기부금, 각출금, 위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자산, 기타 경제적 이익의 증여 또는 무상공여를 한 경우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자산 기부 당시의 가액, 경제적 이익 공여 시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음⁸²⁾
- 광고선전 및 견본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음
 - 교제비 등이란 고객과 공급 업체 기타 사업에 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선물 등의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사업단체, 정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80)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은 1천만엔을 한도로 함

81)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82) 일본 국세청, 「No. 5262 交際費等と寄附金の区分」,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262.htm>, 검색일자: 2021. 6. 7.

의미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증여를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봄

-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적용대상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적용범위는 개인과 동일함
 - 일반기부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말함
 -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일반기부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한편 법인은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하여도 기부금으로 봄⁸³⁾⁸⁴⁾
 - 자산의 저가양도란 자산의 양도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양도 또는 공여의 대가가 자산 양도 또는 그 경제적인 이익 공여 시의 시가에 비해 낮은 경우를 말함
 - 시가란 과세기간의 자산 현황에 따라 다수의 불특정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평가액을 말함⁸⁵⁾
 - 시가와 양도 또는 경제적 이익 공여 시의 대가와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무상공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 됨
 - 법인이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차액을 일반기부금으로 보고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여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

83)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8항

8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85) 일본 「재산평가기본통달」 제1조 제2항

〈표 III-2〉 일본의 개인 및 법인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범위 비교

기부금 유형		개인	법인
특정기부금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
	② 지정기부금	○	○
	③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
	④ 특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	○
	⑤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	○
	⑥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	○	○
	⑦ 특정 신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취득 시 기부금 특례	○	-
일반기부금	①~⑤ 이외의 기부금	-	○

자료: 본문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나. 개인

1) 공제방법 및 한도⁸⁶⁾

-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대상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세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 개인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특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공제로 총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함⁸⁷⁾
 - 단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및 공익사단 법인 등 공익특정법인에 대한 특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86) 일본 국세청, 「寄附金を支出したとき」,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4_3.htm, 검색일자: 2020. 7. 16.

87)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특정기부금 소득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총소득금액 등⁸⁸⁾의 40%와 특정기부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에서 2천엔을 차감한 금액임
 - 일본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중 2천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여기서 기부금 최저한인 2천엔은 기부금 공제와 기부금 특별공제(세액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임

- 공익사단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⁸⁹⁾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소득금액 등의 40%를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 이내에서 공제를 허용함
 - 기부금 특별공제율은 기부단체에 따라 기부금액의 40%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음⁹⁰⁾
 - 공익사단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액-2천엔)×40%
 -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액-2천엔)×40%

- 일본의 개인기부금 유형별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를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88) 총소득금액 등이란 순손실, 잡손실,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공제 적용 후 총소득금액, 특별공제 전의 분리과세되는 장·단기 양도소득금액의 금액, 주식 등과 관련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금액, 선물(先物)거래와 관련된 잡소득 등의 금액, 산림소득 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일본 국세청, 「寄附金控除の金額」,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21. 7. 16.)

89)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치 활동에 대한 기부금이란 개인이 지출한 다음 단체 등에 대한 정치 활동에 대한 기부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

(1) 정당(지부 포함) (2) 정치자금단체 (3) 기타 정치단체에서 일정한 것 (4) 특정 공직 후보자

90) 참고로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30%임

〈표 III-3〉 일본의 개인기부금 유형별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특정기부금 유형	공제방식	공제액	공제한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Min[특정기부금의 합계액, 소득금액의 40%]-2천엔 ²⁾	·소득금액의 40%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특정 신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취득 시 기부금 특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	·소득공제 시: 상동 ·세액공제 시: (기부금액 ¹⁾ -2천엔 ²⁾ ×40% ³⁾	·소득공제 시: 상동 ·세액공제 시: 소득세액의 25%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주: 1) 기부금의 합계액은 원칙적으로 총소득금액 등의 40% 상당액이 한도임
 2) 기부금 공제와 기부금 특별공제(세액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임
 3)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30%임
 자료: 본문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2) 현물기부

□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운용 중임

가) 기부가액의 평가

□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한 자산의 그 기부 당시의 가액(이하 '시가'라 칭함)으로 평가함⁹¹⁾

○ 다만 간주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을 시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공제 전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함

91)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제78조; 「조세특례조치법」 제31조의4; 「조세특례조치법」 제40조 통달 31의 4-1

- 예를 들어 토지는 양도비용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취득부대비용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함⁹²⁾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법인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하여 기부가 발생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를 간주 양도소득세라고 함⁹³⁾
 - 즉 자산의 취득 시부터 기부 시까지 가격 등의 귀속에 대해 양도소득세⁹⁴⁾가 과세됨⁹⁵⁾
- 다만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그 기부가 공익의 증진⁹⁶⁾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⁹⁷⁾⁹⁸⁾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기부가 공익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 기부재산이 기부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 등의 공익 목적사업에 대하여 직접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경우

92)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제78조; 「조세특례조치법」 제40조

93) 일본 국세청, 「公益法人等に財産を寄附した場合の譲渡所得等の非課税の特例のあらまし」,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joto/annai/23300007_01.htm, 검색일자: 2021. 6. 22.

94)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말하며, '수입금액-매각자산의 취득원가·양도비용 - 특별공제액'의 산식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 제2권』, 2020, p. 107)

95) 일본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96)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을 말함

97)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98) 일본 국세청, 「No. 3105 譲渡所得の対象となる資産と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tebiki/2015/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21. 6. 22.

- 기부자의 소득세 또는 기부자 친족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과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이란 공익 사단법인, 공익 재단법인, 특정 일반법인(「법인세법」에 정한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⁹⁹⁾
 -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갱생보호법인, 종교법인 및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등이 이에 해당됨

3) 용역기부

- 개인의 용역기부에 대하여는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4) 이월공제

- 공제한도는 기부가 이루어지는 때 과세연도에 계산되며, 사용하지 않는 공제한도액은 이월할 수 없음

5) 기타

- 기부금 공제는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본인 또는 비거주자 본인이 매년 특정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이외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¹⁰⁰⁾

99) 일본 국세청, 「公益法人等に財産を寄附した場合の譲渡所得等の非課税の特例のあらまし」,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joto/annai/23300007_01.htm, 검색일자: 2021. 6. 22.

100) 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s://www.nta.go.jp/taxes/s hiraberu/taxanswer/shotoku/1150_qa.htm#q1, 검색일자: 2021. 6. 16.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자가 기부단체가 발행하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함

다. 법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 중 그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 시 자본 등의 금액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¹⁰¹⁾
 -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함¹⁰²⁾
 - 일반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
 - 공익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두어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과 별도의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함¹⁰³⁾
 - 공익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법인이란 주로 특정 공익증진법인과 인정 NPO 법인을 말함
 - 한편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일반기부금에 포함되어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 시 적용됨

101)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102)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103)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4항;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1의2

-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대상에 따라 그 법인의 자본금 등의 금액,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 특정 공익증진법인 및 인정 NPO 법인¹⁰⁴⁾ 등에 대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제외)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으로 산입함¹⁰⁵⁾
 - 특정 공익증진법인 및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¹⁰⁶⁾
 - 자본 또는 출자가 있는 법인: $[\text{자본 등의 금액} \times \text{당기 월수} / 12 \times 3.75 / 1,000 + \text{소득금액}^{107}) \times 6.25 / 100] \times 1/2$
 - 자본 또는 출자가 없는 법인: $\text{소득금액} \times 6.25 / 100$
 - 일반기부금¹⁰⁸⁾의 손금산입 한도액¹⁰⁹⁾
 - 자본 또는 출자가 있는 법인: $[\text{자본 등의 금액} \times \text{당기월수} / 12 \times 2.5 / 1,000 + \text{소득금액} \times 2.5 / 100] \times 1/4$
 - 자본 또는 출자가 없는 법인: $\text{소득금액} \times 1.25 / 100$

2) 현물기부

- 법인의 현물기부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운용 중임
 -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함
 - 기부금이 기부유형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음

104)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11의2

105) 일본 국세청, 「No.5283 特定公益増進法人に対する寄附金」,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283.htm>, 검색일자: 2021. 6. 22.

106)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의2

107) 소득금액은 지출한 기부금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임

108)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일반기부금의 금액에 포함됨

109)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가) 기부가액의 평가

-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함¹¹⁰⁾
 - 자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시 가액(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그 상대방에게 기부한 것으로 취급함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이는 매각이익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수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자산의 판매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있음¹¹¹⁾
 - 법인이 증여, 저가양도 등을 통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 다만 법인이 중요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① 양도에 의해 취득한 대가 금액 또는 자산의 가액과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 직전 장부가액(양도비용 포함)과의 차액과 ② 2천만엔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양도의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특별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¹¹²⁾
 - 중요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토지 이외에도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과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특별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특별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이에 해당됨

110)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제7항

111) 일본 법령정보시스템, 「収益の額」,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0AC0000000034>, 검색일자: 2021. 7. 20.

112)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5조의3; 일본 문화청, 「文化財保護に関する税制優遇措置について」,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bunkazai/kikaku/h18/04/shiryo_7.html, 검색일자: 2021. 7. 12.

- 국가 등이란 국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을 말함

3) 용역기부

- 법인의 용역기부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4) 이월공제

- 공제한도는 기부가 이루어지는 때 과세연도에 계산되며, 사용하지 않는 공제한도액은 이월할 수 없음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각각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및 공제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 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제외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고, 법인사업자는 일정한 한도 내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¹¹³⁾을 허용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용됨
 - 개인사업자는 2천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총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소득 공제하거나 기부단체에 따라 소득세액의 25%를 한도로 4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법인기부금은 공익성을 기준으로 기부단체 및 기부의 성격에 따라 전액 손금으로

113)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인정하거나 법인의 자본금 등 금액,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특정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 산입 대신 개인과 동일하게 기부금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음¹¹⁴⁾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기타 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액수
 - 그 해에 발생한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업무상 비용의 금액
 - 기부금공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등과 함께 소득공제됨¹¹⁵⁾
 -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특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단체에 따라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기부단체 중 특정 공익증진법인,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의 평가방법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용역기부, 이월공제 규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현물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 중이며,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함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법인에게 현물기부 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특별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매각

114) 일본 국세청, 「No.2210 やさしい必要経費の知識」,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10.htm>, 검색일자: 2021. 6. 22.

115) 일본 기업경영지원 사이트, 「個人事業主・フリーランスが行うべき節税対策」, <https://www.smbc-card.com/hojin/magazine/bizi-dora/tax/saving.jsp>, 검색일자: 2021. 6. 22.

이익을 고정자산 매각이익으로 계상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이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봄¹¹⁶⁾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용역기부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3. 프랑스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 프랑스는 「조세일반법(CGI, Code Général des Impôts)」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짐¹¹⁷⁾
 - 자선, 교육, 과학, 복지, 인도주의, 스포츠, 가족 또는 문화성을 가지거나 문화유산의 증진, 환경보호에 기여 또는 프랑스 문화, 언어 및 과학 지식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자선단체 및 기부기금
 - 공익사업, 대학재단, 회사 직원(또는 이 회사가 속한 그룹)의 기부를 위한 회사 재단이 위와 동일한 활동을 할 때 이를 신고한 재단 또는 협회
 - 고등교육 및 예술교육을 위한 비영리기관
 -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
 - 기부가 주요 활동에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연극, 뮤지컬, 안무, 영화 또는 서커스 작품의 공연, 현대미술 전시회 등이 주요 활동인 단체
 - 기부금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해당 기관이나 헤리티지 펀드(Foundation du Patrimoine) 로 이전하는 기부기금

116) 일본 국세청, 「No.3105 譲渡所得の対象となる資産と課税方法」,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21. 6. 22.

117) IBFD, "Taxation of Charities," 2015, p. 277;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200,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577/LEGISCTA000006191957/#LEGISCTA000006191957, 검색일자: 2021. 7. 2.

- 프랑스는 단순기부 외에 유언장에 의한 기부를 포함하는 계약기부가 있음¹¹⁸⁾
 - 대부분의 비영리단체(NPO)는 공익단체에서 제공하는 단순기부 및 계약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공익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계약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는 다음의 단체로 제한하며 계약기부금을 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공유틸리티단체, 종교단체, 가족협회의 공공연맹, 의료·과학 연구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협회,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협회,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는 협회, 기부펀드

나. 개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함¹¹⁹⁾
- 세액공제율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66% 또는 75%를 적용함
 - 공익성이 증명된 재단 및 협회, 공익목적의 조직 및 사업, 고등교육 및 예술 교육기관, 문화 관련 단체,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6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빈민구호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7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75%의 공제율은 2021년 최대 1천유로의 기부에 대해 적용함¹²⁰⁾

118) 미국 Council of Foundation, "Nonprofit Law in France," <https://www.cof.org/content/nonprofit-law-france>, 검색일자: 2021. 7. 15.

119)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fr_s_1.8.1.&refresh=1616992089094#ita_fr_s_1.8.1., 검색일자: 2021. 4. 12.

120) 미국 PWC, <https://taxsummaries.pwc.com/france/individual/other-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1. 4. 12.

-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6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개인의 연간 기부금 공제한도는 과세소득의 20%임¹²¹⁾

2) 현물기부

가) 기부가액의 평가

- 현물기부 또는 권리의 포기도 기부로 간주될 수 있음¹²²⁾
 - 현물기부의 기부가액은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평가함¹²³⁾
 -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 등)은 기부일 전일의 주식시장 거래가격, 부동산은 시장 가격에 따른 추정치로 평가함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됨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공립병원 등이 비영리활동에 제공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함¹²⁴⁾
 - 다음의 자산 이전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함¹²⁵⁾
 - 예술작품, 기념물 또는 역사적 성격의 물건, 서적, 인쇄물 또는 필사본 등을 일반에

121) IBFD, "France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fr_s_1.8.1.&refresh=1616992089094%23ita_fr_s_1.8.1., 검색일자: 2021. 7. 2.;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200 1,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577/LEGISCTA00006191957/#LEGISCTA000006191957, 검색일자: 2021. 7. 2.

122) IBFD, "Taxation of Charities," 2015, p. 277.

123)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2020, p. 94.

124)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794,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1470889?init=true&page=1&query=cgi+794&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1. 7. 14

125)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795,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2914177?init=true&page=1&query=cgi+794&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1. 7. 14.

공개할 목적으로 하는 기부 및 유증

-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또는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기부 및 유증¹²⁶⁾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공립병원 외의 자선공공시설, 자원을 구호 및 자선 활동에 분배하는 공공시설로 인식되는 모든 단체, 자연보호 및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기부 및 유증
-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대학재단, 파트너십재단, 고등교육기관, 무료교육기업,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등교육기관, 학교 및 대학교육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 및 유증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공립병원 외의 법인(legal personality)에 수집품의 공개를 목적으로 예술품, 역사적 물품, 도서 및 인쇄물을 기부 및 증여한 경우
- 저임금 주택단체 또는 그 조합에 대한 기부 및 유증
- 참전용사 및 희생자를 위한 기부 및 유증
- 종교단체, 종교단체연합 및 승인된 교회에 대한 기부 및 유증
- 국립공원의 공공시설을 위한 건물의 기부 및 유증 등

□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기증 및 유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함¹²⁷⁾

- 국가 예술유산의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번호 68-1251의 목적은 박물관과 도서관의 소장품을 늘리고 프랑스에서 예술작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예술작품, 서적, 수집품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양도와 관련된 양도세 및 부가세가 면제됨¹²⁸⁾

126) 요건이란 CGI §200 1의 b 또는 fa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자선, 교육, 과학, 사회, 인도주의, 스포츠, 가족, 문화적 특성, 예술적 유산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조직과 언론 보조금 등을 통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반이익단체를 의미함

127) 프랑스 bofip. impots. gouv.fr, Official Bulletin of Public Finances-Taxes, "Exemption from transfer taxes on donations and bequests to the State of works of high artistic or historical value," <https://bofip.impots.gouv.fr/bofip/686-PGP.html/identifiant=BOI-SJ-AGR-50-10-20120912>, 검색일자: 2021. 7. 9.;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1131, National artistic heritage,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6305929/1979-07-01, 검색일자: 2021. 7. 9.

128)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1131, "National artistic heritage"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6305929/, 검색일자: 2021. 7. 9.

- 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정 기한 내에 취득 또는 수집된 재산의 국가에 증여를 제안하여야 하고 경제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용역기부

- 개인의 용역기부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4) 이월공제

-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이 특정 연도에 납세자 과세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향후 5년 동안 이월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음¹²⁹⁾

다. 법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일반적으로 법인의 기부는 과세목적상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임¹³⁰⁾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받는 단체에 관한 규정은 개인과 법인 거의 유사함
 - 기부는 현금 또는 현물(종업원의 근무시간 기부 포함)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자선기부(charitable donation)의 경우, 기부한 금액 중 200만유로 이하 금액에

129)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200 1a,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577/LEGISCTA000006191957/#LEGISCTA000006191957, 검색일자: 2021. 7. 6.

130) IBFD, "Taxation of Charities," 2015, p. 279;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fr_s_1.&refresh=1625572341980%23cta_fr_s_1.9.5.2., 검색일자: 2021. 7. 6.

대해서는 6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00만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됨¹³¹⁾

- 공제한도는 2만유로 또는 총매출액의 0.5% 중 큰 금액임
- 세액공제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내에 위치한 프랑스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외국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현물 또는 금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회사는 기부금품의 금액과 날짜, 수혜자 및 대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¹³²⁾

2) 현물기부

가) 기부가액의 평가

- 법인이 지출하는 현물 및 서비스 기부도 현금기부와 동일하게 200만유로 또는 매출액의 0.5%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6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0만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됨¹³³⁾
- 2020년 재정법을 통해 2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부에 대해 40%로 세액공제율을 인하하였으나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거나 다음의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¹³⁴⁾

131) 미국 PWC, "France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s://taxsummaries.pwc.com/france/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1. 7. 9.; CGI, §238 bis, 3,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1470858/, 검색일자: 2021. 7. 9.

132)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fr_s_001.html%23cta_fr_s_1.9., 검색일자: 2021. 7. 9.

1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2009, p. 148;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238 bis 2, "Taxable profits and income"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1470858/, 검색일자: 2021. 7. 9.

134) 프랑스 Le One Stop Shop- Financial & Juridique, "Mécénat d'entreprise: prestations fournies par les associations aidant des personnes en difficulté," <https://preprod.impulsa.fr>

- 의료 및 준의료서비스
- 가구, 소형 및 대형 가전제품, 급식 영유아용 재료, 욕실 및 보육장비 등
-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설계된 장비 등
- 학용품(장난감 및 교육용 게임 포함)
- 의복, 신발
- 위생제품, 여성위생보호제품
- 유아용 기저귀
- 요실금에 사용되는 제품, 피임제품

□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제공된 재화의 원가로 이루어짐¹³⁵⁾

- 재고자산인 경우 재고자산의 가치, 구입한 자산인 경우 구입원가로 평가함

□ 법인이 국보급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구입하여 국가 또는 국립박물관에 기증하는 경우, 구입에 지불된 금액의 90%를 세액공제함¹³⁶⁾

- 국내 문화유산뿐 아니라 해외 문화유산의 구입에 대해서도 적용함
-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50%를 한도로 함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프랑스의 법인세 과세대상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임¹³⁷⁾

[/fr/mecenas-dentreprise-prestations-fournies-par-les-associations-aidant-des-personnes-en-difficulte](https://www.legifrance.gouv.fr/mecenas-dentreprise-prestations-fournies-par-les-associations-aidant-des-personnes-en-difficulte), 검색일자: 2027. 7. 27.

13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2009, p. 148.

136) 프랑스 bofip. impots. gour. fr, Official Bulletin of Public Finances-Taxes, "Tax measures subject to prior approval - Approvals in favor of the national artistic heritage - Payments in favor of the acquisition of a national treasure," <https://bofip.impots.gouv.fr/bofip/614-PGP.html/identifiant%3DBOI-SJ-AGR-50-30-20130923#>, 검색일자: 2021. 7. 9.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238 bis-0-A,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29355663, 검색일자: 2021. 7.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2009, p. 151.

137)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2009, pp. 132~137.

-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38조 제1항은 과세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 순소득은 법인의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 말에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함
- 법인이 지출한 현물기부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원가로 평가되므로 양도차익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용역기부

- 기업이 직원들을 통해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부가액을 인정함¹³⁸⁾
- 회사직원의 무료 용역제공 형태인 경우, 기부가액의 금액은 용역에 투입된 각 직원의 보수 및 관련 사회부담금의 합계(총임금비용)로 산출함

4) 이월공제

- 자선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은 기부가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기부공제액은 향후 5년 동안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¹³⁹⁾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자연인을 제외한 법적 실체(legal entities)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

13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2009, p. 148.

139)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2020, p. 100.

-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의 규정을 따르고 법인은 법인세 규정에 따라 기부금 과세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제방법은 개인과 법인 모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함
 -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경우 기부단체에 따라 66%, 75%가 적용되고 법인은 기부금액에 따라 200만유로 이하분은 60%, 200만유로 초과분은 40%를 적용함
 - 공제한도는 개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20%이고 법인은 2만유로 또는 매출액의 0.5% 중 큰 금액임
 - 현물기부금액의 평가는 개인의 경우 시가, 법인의 경우 구입한 자산은 원가로 평가함
 - 개인의 경우 현물기부에 대하여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하나 현물기부자산을 원가로 평가함으로써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용역기부의 경우, 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법인은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함
 -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5년간 허용됨

4. 캐나다¹⁴⁰⁾¹⁴¹⁾

가.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

- 캐나다의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의 종류와 범위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140) 캐나다 국세청, "P113 - Gifts and Income Tax 202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p113/p113-gifts-income-tax.html#P195_25654, 검색일자: 2012. 6. 16.

141) 캐나다 법령정보시스템, "Income Tax Act(R.S.C., 1985, c. 1 (5th Supp.)),"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3.3/page-111.html?txthl=118.1>, 검색일자: 2012. 6. 16.

1) 기부금의 정의

- 캐나다에서 기부(gift)의 개념은 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관습법 또는 민법을 따르고 있음¹⁴²⁾
 - 일반적으로 기부는 대가(consideration) 없이 자발적으로 자산(property)을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됨¹⁴³⁾
 - 관습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기부 의도를 가지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기부로 봄
 - 자격을 갖춘 자(적격 피기부자)에게 자산을 자발적으로 이전해야 함
 - 이전된 자산은 기부자의 소유이어야 함
 - 기부자에게 기부에 따른 어떠한 혜택이나 대가가 주어지면 안 됨
 - 기부란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나 대가를 일부 받더라도 기부할 의도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로 인정하고 있음¹⁴⁴⁾
 - 일반적으로 기부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는 경우 대가의 공정시장가치가 이전된 자산 공정시장가치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로 인정하고 있음¹⁴⁵⁾

142) 캐나다 국세청, "Income Tax Folio S7-F1-C1, Split-receipting and Deemed Fair Market Valu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echnical-information/income-tax/income-tax-folios-index/series-7-charities-non-profit-organizations/series/income-tax-folio-s7-f1-c1-split-receipting-deemed-fair-market-value.html#p1_29, 검색일자: 2012. 7. 12.

143) 캐나다 국세청, "P113 - Gifts and Income Tax 202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p113/p113-gifts-income-tax.html#P195_25654, 검색일자: 2012. 6. 16.

144) 예를 들어 등록된 자선단체인 Anytown Ballet Company에 CAD 1천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단체는 CAD 150 상당의 쇼 티켓 3장을 제공할 경우, CAD 15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부의 적격금액은 CAD 850(CAD 1,000 - CAD 150)임

145)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대가가 이전된 자산 공정시장가치의 80%를 초과하더라도 재무장관에 의해 기부할 의도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졌음이 충족되는 경우 기부로 간주하며, 국세청에 문의하여야 함(사례별로 규칙에 대한 예외를 고려)(캐나다 국세청, "Gifting and receipting,"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cra-multimedia-library/charities-video-gallery/cra-charities-communications-gifting-receipting.html>, 검색일자: 2012. 6. 16.)

2) 기부금의 종류

- 조세지원 적용대상 기부금이란 적격 피기부자(qualified donees)에 대한 자선기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생태보호토지의 기부를 말하며, 적격 피기부자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등록된 다음과 같은 단체를 말함
 - 등록 자선단체¹⁴⁶⁾
 - 등록된 자선단체는 캐나다에서 설립되어 거주하는 자선단체, 공공재단 또는 민간 재단으로 자선 활동을 위하여 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빈곤 해소(푸드뱅크, 무료 급식소, 저비용 주택)
 - 교육의 발전(대학, 연구기관)
 - 종교의 발전(예배 장소 및 선교단체)
 - 지역 사회에 유익한 목적(동물 보호소, 도서관 및 자원 봉사 소방서)
 - 등록 저널리즘 조직
 - 등록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단체
 - 등록 국립예술서비스 기관
 - 등록 노령 거주자를 위한 저비용 주택법인
 - 캐나다의 등록 지방자치단체
 - 캐나다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국제연합과 그 기관들
 - 외국대학, 일반적으로 캐나다 출신 학생들이 등록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
 - 캐나다, 지방 또는 영토의 정부
 - 캐나다 정부가 기부한 등록 외국 자선단체

146) 캐나다 국세청,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registered charity and a non-profit organizatio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arities-giving/giving-charity-information-donors/about-registered-charities/what-difference-between-a-registered-charity-a-non-profit-organization.html>, 검색일자: 2021. 6. 22.

3) 적격 기부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 종류

□ 일반적으로 적격 기부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유형은 다음과 같음¹⁴⁷⁾

- 개인에 대한 기부
-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적격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
- 용역의 기부
- 증여의 약속
 - 숙박권, 발행자가 기부한 상품권¹⁴⁸⁾
- 서약
- 사업비용으로 공제되는 상품 매입가액
- 복권에 대한 지급 또는 상품 당첨 기회
- 행사 또는 프로그램 입장료
- 기부자에게 기부자산 공정시장가치의 80%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부
- 기부자에게 회원가치의 80% 이상의 혜택을 주는 회비
-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현물기부
- 광고 또는 후원의 대가로 제공되는 기부
- 자산의 임대
- 우선사용권
- 부지의 리스

147) 이준봉, 2013, p. 181; 캐나다 국세청, “What types of transactions generally do not qualify as gift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arities-giving/charities/operating-a-registered-charity/receiving-gifts/what-a-gift.html>, 검색일자: 2021. 5. 26.

148) 캐나다 국세청, “Donation of gift certificates or gift card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arities-giving/charities/policies-guidance/donation-gift-certificates-gift-cards.html>, 검색일자: 2021. 5. 26.

나. 개인

1)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은 적격 피기부자에게 지출한 적격 총기부금액에 대하여 비환급성 세액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격 기부란 적격 피기부자에게 5년 이내에 기부한 자선기부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10년 이내에 기부한 생태보호토지를 말함
 - 총기부금이란 당해 연도 총자선기부금액,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기부, 생태보호토지 기부금의 합계액을 말함
 - 적격 기부금액이란 이전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기부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 기부에 따른 혜택을 일부 제공받은 경우라도 혜택의 가치가 기부 공정시장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 혜택(advantage)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 보상, 사용가치 또는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공되는 대가를 말함
-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한도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부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개인의 적격 피기부자에게 지출한 자선기부에 대한 공제한도는 순소득(net income)의 75%임
 -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순소득이란 해당 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에서 허용 가능한 공제액을 모두 차감한 값임¹⁴⁹⁾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및 생태보호토지의 기부는 한도 없이 공제를 허용함

149) H&R BLOCK, "What is net income?," <https://help.hrblockonline.ca/hc/en-ca/articles/227854507-What-is-net-income->, 검색일자: 2021. 4. 26.

- 한편 자본자산 및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순소득(net income)의 100%를 한도로 하여 공제한도에 포함함
 - 당해 연도 기부한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 중 소득에 포함시킨 자본이득의 25%
 - 당해 연도 기부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해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recaptured depreciation)의 25%
 - 단 감가상각비 환수액은 당해 연도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비용과 순처분대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표 III-4〉 캐나다의 개인 적격기부금 한도

기부금의 종류		적격기부금 한도 ¹⁾
자선기부	현금기부	순소득(net income)의 75%
	현물기부 ²⁾	순소득(net income)의 75%
		(+) 당해 연도에 기부한 자본자산으로 인한 자본이득 중 소득으로 산입된 자본이득의 25%
	(+) 당해 연도 기부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해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 ³⁾ 의 25%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한도 없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		한도 없음

주: 1)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 기부금액에 대한 한도임
 2) 순소득의 100%를 한도로 함
 3) 당해 연도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비용과 순처분대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세액공제액은 지출한 총기부금 중 최초 CAD 200까지는 기부금액의 15%, CAD 200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29%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과세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¹⁵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의 공제율이 적용됨
- 총기부금의 첫 CAD 200에 대해 15%
 - 다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33%
 - 첫 CAD 200를 초과하는 연도의 기부 금액
 - 2020년도 기준 CAD 21만 4,368을 초과하는 과세소득 금액
 - 위의 33% 공제율에 해당되지 않는 최초 CAD 200을 초과하는 연간 총기부금의 29%
 - 예를 들어 2019년도 기부금액 CAD 1만, 과세대상 소득 CAD 21만 6,997,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 CAD 21만 4,368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임
 - (1) 최초 CAD 200: $200 \times 15\% = \text{CAD } 30$
 - (2) $\text{Min}[10,000-200, 2,629(=216,997-214,368)] \times 33\% = \text{CAD } 868$
 - (3) $[10,000-200-2,629] \times 29\% = \text{CAD } 2,080$
 - 기부금 세액공제액=(1)+(2)+(3)=CAD 2,978

150) 캐나다 개인 연방소득세율(2020년 기준) (단위: CAD, %)

과세표준	세율
0~4만 8,535 이하	15
4만 8,536~9만 7,069	20.5
9만 7,070~15만 473	26
15만 474~21만 4,368	29
21만 4,368 초과	33

자료: 캐나다 국세청, "Federal income tax," <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financial-toolkit/taxes/taxes-2/5.html>, 검색일자: 2021. 6. 21.

〈표 III-5〉 캐나다의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율

(단위: %)

구분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과세대상 소득 ≤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	최초 총적격기부액 CAD 200	15
	(+) 총적격기부액-CAD 200	29
과세대상 소득 >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	최초 총적격기부액 CAD 200	15
	(+) Min[(총적격기부액-CAD 200), (총과세소득-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 기준 ¹⁾)]	33
	(+) [총기부액-CAD 200-Min[(총적격기부액-CAD 200), (총과세소득-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 기준 ¹⁾)]	29

주: 1) 2020년 기준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은 CAD 21만 4,368임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현물기부¹⁵¹⁾

- 개인의 적격 현물기부(gifts in kind)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운용 중임
 - 현물기부란 자본자산(상각자산 포함) 및 개인용도 자산 등의 비현금성 자산을 기부하는 것을 말함
 - 자본자산이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양도로 인하여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함
 - 자본자산에는 재고자산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포함하지 않음
 - 현물기부에는 용역기부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현물기부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님

151) 캐나다 국세청, "Gifts in kind,"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p113/p113-gifts-income-tax.html#eligible>, 검색일자: 2021. 6. 16.

가) 기부가액의 평가

-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의 평가는 자본자산, 부동산, 열거된 개인용도 자산, 인증 문화재 등 기부자산의 종류에 따라 공정시장가치, 기부자의 지정, 간주공정시장가치와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 현물기부는 원칙적으로 기부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
 -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FMV)란 일반적으로 개방적으로 제한이 없는 시장에서 독립적인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자발적으로 거래되는 가장 높은 가치를 말함
- 기부자는 등록 자선단체 또는 적격 수증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자본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을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조정원가와 공정시장가치 사이의 금액으로 지정(designate)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본자산일 것
 -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기부 시점의 조정원가를 초과할 것
 - 적격 기부영수증을 수취하여 신고할 것
 - 조정원가(Adjusted cost base, ACB)란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원가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이 포함됨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조정원가를 말함
 - 처분대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다음 중 큰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함
 - 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조정원가와 자산의 미상각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

- 단 공정시장가치가 기부 직전 조정된 원가기준보다 낮은 경우 기부자는 선택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를 사용해야 함

- 현물기부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공정시장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간주공정시장가치 규칙(Deemed fair market value rule)이라 함¹⁵²⁾
- 간주공정시장가치(Deemed fair market value)란 기부 직전 공정시장가치와 그 취득원가(자본자산의 경우 조정원가) 중 적은 금액을 말함
- 일정한 요건이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조세피난처(tax shelter) 약정의 일환¹⁵³⁾으로 기부자에 의해 최초로 취득한 자산
 -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기부
 - 자산취득 목적이 기부인 경우에는 기부가 이루어지기 10년 이내 취득한 경우
- 다만 다음의 자본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간주공정시장가치 규칙이 아닌 공정시장가치로 일반적으로 평가함
 - 재고자산
 -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부
 -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 인증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¹⁵⁴⁾
 -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무증권 또는 권리
 - 자본금 또는 뮤추얼 펀드 법인의 지분
 - 뮤추얼펀드 신탁증서

152) 캐나다 국세청, “Deemed fair market value rul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arities-giving/charities/operating-a-registered-charity/issuing-receipts/deemed-fair-market-value-rule.html>, 검색일자: 2021. 6. 16.

153) 예를 들어 캐나다의 조세회피전략은 최초 4년 동안 발생하는 손실, 공제 등의 액수가 투자한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순비용과 같거나 더 큰 자산의 취득과 증여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함(캐나다 국세청, “What is a tax shelter?,”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tax-shelters/what-a-tax-shelter.html>, 검색일자: 2021. 7. 8.)

154) 특별평가절차가 적용되며, 조세피난처 약정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취득한 2014년 2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정 부채증권
- 특수관계에 있는 분리기금 신탁에 대한 이자
-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토지¹⁵⁵⁾

□ 현물기부 시 자산 유형별 기부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표 III-6>과 같음

- 적격 자본자산은 기부 직전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기부자가 조정원가와 공정시장가치 범위 중에서 지정 가능함
 -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text{Max}[\text{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조정원가와 자산의 미상각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 보다 커야 함
 - 기부직전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로 기부가액을 평가함
- 부동산
 - 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을 말함
 -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
 - 다만 캐나다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은 간주공정시장가치 규칙이 적용됨
- 열거된 개인용도 자산¹⁵⁶⁾
 - 개인적 사용 또는 향유를 목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특정 종류의 재산으로 보석, 우표 및 동전 수집품, 예술품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
- 인증 문화재
 - 캐나다 문화재수출심사위원회(Canadian Cultural Property Export Review Board)의 인증을 받은 문화적 가치(outstanding significance)¹⁵⁷⁾가 있는 자산으로

155) 등록된 자선단체가 사설재단(private foundation)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며, 2017년 3월 21일 이후에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민간재단에 기부할 수 없음

156) 캐나다 국세청, "Listed personal property (LPP),"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personal-income/line-12700-capital-gains/completing-schedule-3/listed-personal-property.html>, 검색일자: 2021. 6. 16.

특별평가절차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

- 창작자(예술가)가 기증한 작품
 - 예술가가 제작한 그림, 조각, 보석 등을 말함
 - 창작자가 작품을 적격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제작비용과 공정시장가치 사이의 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기부로 제공받은 혜택과 제작비용 중 큰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됨
 - 공정시장가치가 제작비용보다 낮은 경우 기부자는 선택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를 사용해야 함
- 딜러가 판매하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
- 등록된 자선단체는 현물기부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가 현물기부에 대한 공정시장가치(FMV)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개인용도 자산,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 등 기부할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CAD 1천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감정인 등의 평가가 필요함

〈표 III-6〉 캐나다의 현물기부 유형별 기부금 평가방법

현물기부 유형	현물기부금의 평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자산 - 감가상각 자산 - 매각될 경우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 	<p>(1) 기부 직전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기부자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조정원가~공정시장가치</p> <p>- 단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다음 중 큰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조정원가와 자산의 미상각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 <p>(2) 기부 직전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 → 공정시장가치</p>

157) 캐나다 역사나 국민 생활과의 긴밀한 연관성, 미학적 특성, 예술이나 과학 연구에서의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말함

〈표 III-6〉의 계속

현물기부 유형	현물기부금의 평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자산 · 캐나다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 인증 문화재 · 생태보호토지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세 비과세 특정자산 · 딜러가 판매하는 예술품 · 열거된 개인용도 자산 	공정시장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자(예술가)가 기증한 작품 	<p>(1) 제작비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기부자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제작비용~공정시장가치</p> <p>- 단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다음 중 큰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 제작비용 <p>(2) 제작비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 → 공정시장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¹⁾ - 조세피난처 계약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 기부가 이루어지기 전 3년 미만 취득 - 자산취득 목적이 기부인 경우에는 기부가 이루어지기 10년 이내 취득한 경우 	<p>간주공정시장가치</p> <p>→ Min[공정시장가치, 취득원가*]</p> <p>* 자본자산인 경우 기부 직전 조정원가</p>

주: 1) 재고자산,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부,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인증 문화재,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무증권 또는 권리, 자본금 또는 뮤추얼펀드 법인의 지분, 뮤추얼펀드 신탁증서, 법정 부채증권, 특수 관계에 있는 분리기금 신탁에 대한 이자. 생태보호토지는 제외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기부자산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자본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간주처분의제(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로 인하여 자본이득 과세대상이 되며,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함

- 캐나다 국세청(CRA)은 자본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에는 서식 T1170, 특정 자산의 기부에 대한 자본이득(Capital Gains on Gifts of Certain Capital Property)을 작성해야 함
- 다만 캐나다에서는 자본이득 중 일부만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음¹⁵⁸⁾
 - 2020년 포함율은 일반적으로 50%임¹⁵⁹⁾
 - 포함율(inclusion rate)이란 소득에 포함되는 자본이득 비율 또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자본손실 비율을 일컫음
- 그러나 등록 자선단체 또는 적격 수증자에 대한 적격 자본자산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자가 현물기부에 따른 자본이득 계산 시 처분대가를 조정원가와 공정시장가치 사이의 금액으로 지정하여 자본이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적격 자본자산 요건 및 자본이득 계산 시 처분대가로 지정하는 방법은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의 평가방법과 동일함
- 한편 특정 자본자산을 적격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포함율(산입율)이 50%에서 0%로 감소하며,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자본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함¹⁶⁰⁾
 -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무증권 또는 권리
 - 자본금 또는 뮤추얼펀드 법인의 지분
 - 뮤추얼펀드 신탁증서
 - 법정 부채증권
 - 특수관계에 있는 분리기금 신탁에 대한 이자

158) 2001년 이후로 자본이득 중 50%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159) 해당 연도의 자본손실을 1/2로 곱하여 허용 가능한 자본손실을 결정함

160) H&R BLOCK, "T1170: Capital Gains on Gifts of Certain Capital Property," <https://help18.hrblockonline.ca/hc/en-ca/articles/360012677572-T1170-Capital-Gains-on-Gifts-of-Certain-Capital-Property>, 검색일자: 2021. 6. 16.

-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토지 등
 - 민간재단에 대한 기부는 해당되지 않음
-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자본자산을 기부하더라도 기부로 인하여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 계산 시 포함율이 달리 적용됨
 - [자본이득×(적격 기부금액/처분대가)]에 대하여는 자본이득 포함율이 0%임
 - 적격 기부금액이란 이전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기부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 기부로 인하여 제공받은 혜택으로 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율은 50%임

3) 용역기부

- 개인의 용역기부에 대하여는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

4) 이월공제

- 공제받지 않은 자선기부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관련 기부금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생태보호토지의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대상 금액 중 미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음

다. 법인

- 법인에 대한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공제방식을 제외하고는 조세지원 적용대상 기부금의 종류 및 적격 피기부자의 범위,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 현물기부, 용역기부, 이월공제 등에 대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법인이 지출하는 적격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개인과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deduction)의 방식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법인의 기부금공제는 순소득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Division C에 규정되어 있음¹⁶¹⁾
 - 법인의 Division C 공제는 캐나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 순자본손실 이월공제 등이 있음

- 법인이 자본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동일하게 간주처분의제(Deemed disposition of property)로 인하여 자본이익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율을 적용함

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공제방식을 제외하고는 조세 지원 적용대상 기부금의 종류 및 적격 피기부자의 범위, 기부금 공제한도, 현물기부 시 평가방법 및 자본이득 과세 여부, 용역기부, 이월공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공제방식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한도 내 기부금에 대하여 비환급성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법인사업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은 첫 CAD 200에 대해 15%, CAD 2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9%, 과세대상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계산 방식에 따라 33%를 적용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부 유형 및 기부자산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현금기부의 경우에는 순소득의 75%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161) 캐나다 국세청, "Calculating net income or los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3-page-3-t2-return.html>, 검색일자: 2021. 6. 17.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기부금 지출 시 공제할 수 있는 사업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득세법」에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¹⁶²⁾
 - 소득을 가득하거나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거나 해당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납세의무자의 사업 또는 자산에 연계된 소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 한편 캐나다의 경우 자본소득 및 자본손실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바,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일체의 소득 및 손실은 사업소득과 별도로 계산되어 과세되고 있음¹⁶³⁾
 - 과세대상 자본이익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함

162) 캐나다 「소득세법」 제18조

163)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 94.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개인

1)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한도

- 개인의 기부금 조세지원 방법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국가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외 소득자는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원천에 따라 조세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음
 - 필요경비 산입은 세액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조세효과 측면에서 소득공제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소득공제'로 기술함
 - 일본의 경우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특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특정기부금 중 특정 공익증진법인과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어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조세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음
 - 미국은 소득공제, 프랑스와 캐나다는 세액공제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소득원천이나 기부단체별로 공제방식에 차이는 없음

- 소득공제방식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소득의 범위에서 한도 없이 공제가능한 법정기부금과 소득의 30%를

한도로 하는 지정기부금이 있음

- 단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가 적용됨

- 미국은 현금기부 기준으로 볼 때, 공제한도가 소득의 60%가 적용되는 단체와 소득의 30%를 적용하는 단체가 있음
 -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2020년과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현금기부에 대해 소득의 60% 공제한도 대신 소득의 100% 한도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본은 세제적격기부금에 대해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고 2천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40%를 한도로 함

□ 세액공제방식인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캐나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15%(1천만원 이하), 30%(1천만원 초과)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공제가능한 기부금은 소득공제한도와 동일함
- 일본은 2천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를 한도로 함
- 프랑스는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75% 또는 6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75%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부금은 최대 1천유로(2021년)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66%의 공제율을 적용함
 - 연간 기부금 공제한도는 과세소득의 20%임
- 캐나다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첫 CAD 200에 대해 15%, CAD 200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9%, 과세대상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계산 방식에 따라 33%를 적용함
 - 공제가능한 기부금은 자선기부에 대해서는 현금기부 시 소득의 75% 한도가 적용되고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함

- 개인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을 기부금 종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고 일부 기부단체에 한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선택을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대부분 현금기부와 비현금기부에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비현금자산 기부의 경우 현금기부보다 낮은 공제율을 적용함
 - 캐나다는 개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 이하이면 2단계,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 초과이면 3단계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대상소득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음

〈표 IV-1〉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국가	공제방법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세액공제
한국	·사업소득만 있는 자:소득공제 ·그 외: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소득금액×10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없는 경우: 소득금액×30% ·기부금 있는 경우: 소득금액×10% + 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미국	소득공제	50% 공제한도 단체	·현금기부: 조정총소득의 60% ¹⁾ ·비현금기부, 자본이득자산(장부가액): 조정총소득의 50% ·자본이득자산(FMV): 조정총소득의 30%	-
		그 외 적격단체	·현금기부, 비현금기부: 조정총소득의 30% ·자본이득자산: 조정총소득의 20%	-

〈표 IV-1〉의 계속

국가	공제방법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세액공제
일본	소득공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부금	·소득공제액: Min[특정기부금의 합계액, 소득금액의 40%]-2천엔 ·소득공제한도: 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특정공익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지출한 금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	특정 공익 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시 상동 ·세액공제한도: 소득세액의 25%	·세액공제액 = (기부금액 ²⁾ -2천엔)×40%
프랑스	세액공제	75% 공제율 적용 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과세소득의 20%	·세액공제액 = 기부금(최대 1천유로)×75% ³⁾
		66% 공제율 적용 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66%
캐나다	세액공제	자선기부	·공제한도: 순소득×75% ⁴⁾	·세액공제율: CAD 200 미만: 15% CAD 200 초과분: 29%, 33% ⁵⁾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	·공제한도: 한도 없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	·공제한도: 한도 없음	

주: 1) 2020년과 2021년에 지출한 현금기부에 대해서는 조정총소득의 100%의 한도를 적용함

2) 기부금의 합계액은 원칙적으로 총소득금액 등의 40% 상당액이 한도임

3) 한도 초과액은 66% 공제율 적용

4) 현물기부 시 자본이득과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비 환수액 중 25%를 순소득의 100% 내에서 한도에 추가함

5) 과세대상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계산방식에 따라 33%의 세액공제율 적용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현물기부

- 조사대상국 모두 현물기부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현물자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의 납세신고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되는 자산과 자산별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음

-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는 크게 장부가와 시가로 구분할 수 있음¹⁶⁴⁾
 - 우리나라는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이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시가, 가치가 하락한 자산은 장부가를 의미함
 - 미국은 공정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부 시점에 가치가 상승한 자산의 경우 일반 소득자산은 장부가, 자본이득자산은 장부가(50% 공제한도 적용) 또는 시가(30% 공제한도 적용)로 평가함
 - 일본은 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시가에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함
 - 캐나다의 경우에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액을 평가하고 기부자가 기부가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자본자산과 창작자의 작품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조정원가 또는 제작비용과 공정시장가치 사이의 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채고자산, 부동산, 인증문화재, 생태보호토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예술품, 개인용자산은 가치 증가와 관계없이 시가로 평가함
 - 요건 충족 시¹⁶⁵⁾ 장부가와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함

164) 우리나라는 세법상 '시가'와 '장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국가에서는 장부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조정된 장부가(Adjusted Basis)', '조정원가', '취득원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시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정시장가치(FMV)'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용어인 시가와 장부가로 일치시켜 기술함

165) 요건이란 ① 조세피난처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 ② 기부가 이루어지기 전 3년 미만 취득 ③ 기부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면 기부가 이루어지기 전 10년 미만 취득한 자산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기부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한 조사대상국가에서 비과세하고 있음
 - 캐나다는 원칙은 과세이나 처분대가를 지정하는 경우 과세 자본이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상장주식 및 생태보호토지 등 특정 자본자산은 비과세함

〈표 IV-2〉 주요국의 개인 현물기부 기부가액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비교

국가	구분	기부가액의 평가	양도차익 과세 여부
한국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	· 비과세
미국	원칙	· 공정시장가치	· 비과세
	공정시장가치 > 장부가	일반소득자산 ¹⁾ · 장부가	
		자본이득자산 ¹⁾ · 장부가 또는 공정시장가치	
일본	원칙	· 시가	· 과세 · 비과세특례 시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시가-양도차익	
프랑스	원칙	· 시가	· 비과세
캐나다	적격 자본자산 ²⁾	·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기부자가 조정원가와 공정시장가치의 범위에서 지정 ³⁾ (한도: 공정시장가치) ·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 공정시장가치	· 일반: 과세 - 처분대가를 지정하는 경우 과세 자본이득 감소 가능 · 상장주식 및 생태보호토지 등 특정 자본 자산: 비과세 ⁷⁾
	재고자산, 부동산, 인증문화재, 생태보호토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예술품, 개인용 자산	· 공정시장가치	
	창작자가 기증한 작품	· 제작비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기부자가 조정원가와 공정시장가치의 범위에서 지정 ⁴⁾ (한도: 공정시장가치) · 제작비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 공정시장가치	
	일정한 요건 ⁵⁾ 충족 시	Min[공정시장가치, 취득원가 ⁶⁾]	

〈표 IV-2〉의 계속

- 주: 1) 일반소득자산은 일반소득 및 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이고, 자본이득자산은 장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임
- 2) 자본자산이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양도로 인하여 자본손익이 발생하는 자산임(재고자산, 사업용자산 제외)
- 3)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Max[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조정원가와 자산의 미상각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보다 커야 함
- 4)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Max[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제작비용]보다 커야 함
-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세피난처 약정의 일환으로 기부자에 의해 최초로 취득한 자산 ②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기부 ③ 자산취득 목적이 기부인 경우에는 기부가 이루어지기 10년 이내 취득한 경우
- 6) 자본자산인 경우 기부 직전 조정원가
- 7) 특정 자본자산이란 상장된 주식 등, 자본금 및 뮤추얼펀드의 지분, 뮤추얼펀드 신탁증서, 법정부채 증권, 특수관계에 있는 분리기금신탁에 대한 이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토지
-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용역기부

- 우리나라는 일부 용역기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국 중 용역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 용역 대가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용역제공 자체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적격단체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비용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환급받지 않은 비용은 일반적인 기부금공제 대상임

〈표 IV-3〉 주요국의 개인 용역기부 조세지원제도 비교

국가	인정범위	기부가액의 평가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 용역	법정기부금: 봉사일수×5만원+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미국	불인정 ¹⁾	-
일본	불인정	-
프랑스	불인정	-
캐나다	불인정	-

주: 1) 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기부금으로 공제가능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이월공제

- 조사대상국 중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기부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자선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우리나라는 10년,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
 - 미국과 캐나다는 특정 자산의 기부에 대해 보다 긴 이월공제 기간을 허용함
 - 미국의 경우 적격보전기부에 대해 15년, 캐나다는 중요 생태토지에 대해 10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

〈표 IV-4〉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비교

국가	이월공제 허용 여부	이월기간
한국	허용	10년
미국	허용	자선기부: 5년 적격보전기부: 15년
일본	허용 안 함	-
프랑스	허용	5년
캐나다	허용	자선기부, 문화재: 5년, 중요 생태보호토지: 10년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법인

1)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한도

- 법인이 적격 기부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하 ‘법인기부금’이라 함)에 대하여 조사 대상국 모두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공제방식은 한국, 미국, 일본은 손금산입,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프랑스는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¹⁶⁶⁾
- 법인기부금에 대하여 조사대상국 모두 기부단체, 기부자산의 종류, 기부금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금액의 50%, 10%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
 - 사회적기업¹⁶⁷⁾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율은 20%임
 - 미국은 기부단체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과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있음
 - 미국은 「CARES법」에 의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격 현금기부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25%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함
 - 일본은 공익성을 기준으로 기부단체 및 기부의 성격에 따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하고 있음
 - 조세지원 대상 법인기부금은 크게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 특정 공익증진 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네 가지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이 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자본금 등 금액,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166) 법인세액 계산 시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는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각 차감하는 금액이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법인세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공제방식으로 본 절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설명함

16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함

- 프랑스는 기부금 규모 및 기부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2만 유로와 매출액의 0.5%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부금액 200만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금액의 60%, 40%를 세액공제함
 - 2020년 「재정법」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서비스 및 재화¹⁶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 규모에 관계없이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특히 법인이 국보급의 문화재를 국가 등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50%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9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 캐나다는 기부 유형 및 기부자산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 현금기부의 경우에는 순소득의 75%를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현물기부 시에는¹⁶⁹⁾ 자본이득과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비 환수액 중 25%¹⁷⁰⁾를 한도에 추가로 포함함
 - 현물기부 중 문화재 및 생태보호토지에 대하여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함

〈표 IV-5〉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비교

국가	공제방식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한국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¹⁾ -이월결손금)×50%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¹⁾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10%(사회적기업 20%)
미국	손금산입	공제대상 자선단체	과세소득 ²⁾ 의 10% (2020년, 2021년 한시적으로 적격 현금기부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25% ³⁾)
일본	손금산입	국가·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168) 의료 및 진료서비스, 가구, 소형 및 대형 가전제품, 급식 영유아용 재료, 욕실 및 보육장비 등,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설계된 장비 등

169) 현물기부 시 순소득의 100%를 한도로 함

170) 당해 연도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비용과 순처분대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표 IV-5〉의 계속

국가	공제방식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일본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자본이 있는 법인	$[자본 등의 금액 \times \text{당기월수} / 12 \times 3.75 / 1000 + \text{소득금액}^4] \times 6.25 / 100] \times 1/2$
			자본이 없는 법인	$\text{소득금액}^4 \times 6.25 / 100$
		일반기부금 ⁵⁾	자본이 있는 법인	$[자본 등의 금액 \times \text{당기월수} / 12 \times 2.5 / 1,000 + \text{소득금액}^4] \times 2.5 / 100] \times 1/4$
			자본이 없는 법인	$\text{소득금액}^4 \times 1.25 / 100$
프랑스	세액공제	적격기부	1) 세액공제액: - 200만유로 이하분: 60% - 200만유로 초과분: 40% ⁶⁾ 2) 세액공제 한도: - Max[2만유로, 매출액의 0.5%] · 국보급 문화재: 기부금액의 90%(법인세의 50% 한도)	
캐나다	소득공제	자선기부	현금기부	순소득 ⁷⁾ 의 75%
			현물기부 ⁸⁾	순소득 ⁷⁾ 의 75% (+) 당해 연도에 기부한 자본자산으로 인한 자본이득 중 소득으로 산입된 자본이득의 25% (+) 당해 연도에 기부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해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 ⁹⁾ 의 25%
		문화재	한도 없음	
		생태보호토지	한도 없음	

주: 1) 기준소득금액이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세무 조정을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에 비용으로 계상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임
 2) 과세소득이란 자선기부금 공제를 고려하기 전 순영업손실 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3) 「CARES법」에 의해 2020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고,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의해 202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4) 소득금액은 지출한 기부금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임
 5)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기부금의 금액에 포함됨
 6) 2020년 「재정법」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7) 순소득은 지출한 기부금의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세무조정을 완료한 금액임
 8) 순소득의 100%를 한도로 함
 9) 당해 연도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비용과 순처분대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법인기부금에 대하여 조사대상국 모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기준, 자본기준, 매출액 기준을 이용하고 있음
 - 미국, 한국, 캐나다는 소득기준, 일본은 소득기준과 자본기준, 프랑스는 매출액 기준을 이용하고 있음

〈표 IV-6〉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공제한도액 계산 기준 비교

국가	한도액 계산 기준
한국	소득기준
미국	소득기준
일본	소득기준, 자본기준
프랑스	매출액 기준
캐나다	소득기준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현물기부

-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국 모두 적격 현물기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물기부 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음
- 법인의 현물기부 시 평가방법은 기부금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조사대상국은 일반적으로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나 기부단체 또는 기부유형에 따라 장부가액 등으로 달리 평가하기도 함
 - 우리나라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함
 - 법정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 외의 자산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 미국은 자산 유형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함

- 일반적으로 가치상승 시 일반소득자산은 장부가액, 자본이득자산은 공정시장 가치¹⁷¹⁾로 평가함
 - 일본은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기부 시점의 시가로 기부금액을 평가함
 - 단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시가¹⁷²⁾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일반기부금으로 보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함
 - 프랑스는 현물기부 시 구입한 자산의 원가로 평가함
 - 캐나다는 자산 유형에 따라 현물기부 기부금액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운용 중임
 - 적격 자본자산 또는 창작자의 작품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하여 조정원가 또는 제작비용과 공정시장가치 사이의 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음¹⁷³⁾
 - 재고자산, 캐나다 소재 부동산, 문화재, 생태보호토지 등 특정 자산은 공정시장 가치로 평가함
 - 한편 일정한 요건¹⁷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주공정시장가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시장가치와 조정원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함¹⁷⁵⁾
- 법인의 현물기부 시 조사대상국에서는 해당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적격 기부단체 및 특정 자본자산 양도 시에는 비과세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171)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됨

- 법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사업비밀, 기술 등과 유사한 자산을 기부
- 유형 개인자산을 기부하고 자선단체가 이를 면세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
-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일부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에 사용한 경우

172) 일본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상가액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시가로 평가함

173)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Max[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조정원가와 자산의 미상각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보다 커야 함

174)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조세피난처 약정의 일환으로 기부자에 의해 최초로 취득한 자산 ②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기부 ③ 자산취득 목적이 기부인 경우에는 기부가 이루어지기 10년 이내 취득한 경우

175) 다만 재고자산,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부,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인증 문화재,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생태보호토지 등은 제외됨

- 우리나라는 기부금 종류에 따른 기부가액의 평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데 법정기부금 및 특수관계자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양도로 인한 차익이 과세되지 않음
- 미국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데, 일반소득자산 중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본이득자산은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므로 양도로 인한 차익은 과세됨
 - 특허권 등,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형 개인자산, 민간재단이 사용하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양도차익은 비과세됨
- 일본은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로 인한 차익은 익금으로 산입함
 - 다만 법인이 국가 등에 대한 중요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2천만엔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함
- 프랑스는 구입한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을 원가로 평가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 캐나다는 개인과 동일하게 현물기부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간주처분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자본이득 포함율은 2020년 기준 50%임
 - 다만 기부자가 적격 자본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자본이득 계산 시 처분대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어 자본이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또한 생태보호토지 등 특정 자본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허용하여 자본이득 포함율이 0%임

〈표 IV-7〉 주요국의 법인 현물기부 시 기부가액 평가 및 양도차익 과세 여부 비교

국가	구분	기부가액의 평가	양도차익 과세 여부	
한국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특수관계가 아닌 지정기부금: 비과세 ·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 시가 평가 시 과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장부가액		
	이 외의 경우	·Max[시가, 장부가액]		
미국	원칙	·공정시장가치	·일반소득자산: 비과세 ·자본이득자산: 과세 ²⁾	
	공정시장가치 > 장부가	일반소득자산 ¹⁾		·장부가액
		자본이득자산 ¹⁾		·공정시장가치 ²⁾

〈표 IV-7〉의 계속

국가	구분	기부가액의 평가	양도차익 과세 여부
일본	원칙	·시가	·과세 ³⁾
	저가양도	·시가와 실질거래가액과의 차액	
프랑스	원칙	·구입한 자산의 원가	·비과세
캐나다	적격 자본자산 ⁴⁾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조정원가와 공정시장가치 내 범위에서 지정 ⁵⁾ (한도: 공정시장가치) ·조정원가가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 공정시장가치	·원칙: 과세 -처분대가를 지정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본이득 감소 가능 ·상장주식 및 생태보호토지 등 특정 자본자산: 비과세 ¹⁰⁾
	재고자산, 캐나다 소재 부동산, 문화재, 생태보호토지 등 특정 자산	·공정시장가치	
	창작자의 예술품	·제작비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작은 경우: 제작비용과 공정시장가치 내 범위에서 지정 ⁶⁾ (한도: 공정시장가치) ·제작비용이 공정시장가치보다 큰 경우: 공정시장가치	
	일정한 요건 ⁷⁾ 충족 시	·간주공정시장가치 ⁸⁾ : Min[공정시장가치, 취득원가 ⁹⁾	

주: 1) 일반소득자산은 일반소득 및 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이고 자본이득자산은 장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임
 2) 특허권 등,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형 개인자산, 민간재단이 사용하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양도차익은 비과세임
 3) 법인이 국가 등에 대한 중요 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2천만엔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함
 4) 자본자산이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과 양도로 인하여 자본손익이 발생하는 자산임(재고자산, 사업용 자산 제외)
 5)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Max[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조정원가와 자산의 미상각 자본비용 중 적은 금액]보다 커야 함
 6) 기부금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은 Max[기부로 제공받은 혜택, 제작비용]보다 커야 함
 7)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세피난처 약정의 일환으로 기부자에 의해 최초로 취득한 자산 ② 기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한 기부 ③ 자산취득 목적이 기부인 경우에는 기부가 이루어지기 10년 이내 취득한 경우
 8) 재고자산,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부,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인증 문화재,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생태보호토지 등은 제외됨
 9) 자본자산인 경우 기부 직전 조정원가
 10) 특정 자본자산이란 상장된 주식 등, 자본금 및 뮤추얼펀드의 지분, 뮤추얼펀드 신탁증서, 법정부채 증권, 특수관계에 있는 분리기금신탁에 대한 이자, 생태보호토지를 말함
 자료: 본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용역기부

- 법인의 용역기부 시 조사대상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지원 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프랑스는 법인의 용역기부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이 직원들을 통해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무료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에 투입된 각 직원의 보수 및 관련 사회부담금의 합계(총임금비용)를 기부가액으로 인정함

〈표 IV-8〉 주요국의 법인 용역기부 조세지원제도 비교

국가	인정범위	기부가액의 평가
한국	불인정	-
미국	불인정	-
일본	불인정	-
프랑스	직원들을 통해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 보수 및 관련 사회부담금의 합계(총임금)
캐나다	불인정	-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이월공제

- 법인의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하여 조사대상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5년 또는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이월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긴 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과 프랑스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5년임

- 캐나다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적용하고, 생태보호토지에 대하여 10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

〈표 IV-9〉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비교

국가	이월공제 허용 여부	이월공제 기간
한국	허용	10년
미국	허용	5년
일본	허용 안 함	-
프랑스	허용	5년
캐나다	허용	자선기부 및 문화재: 5년, 생태보호토지: 10년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방안 검토

- 개인의 기부금 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과세불공평 및 사업소득자 유형에 따른 과세불공평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

-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소득원천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이전까지는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으로 소득원천에 따른 조세효과 차이는 없었으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산입함으로써 감면효과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 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소득공제방식 하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음¹⁷⁶⁾

-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으로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기부가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제도 전환 이후에도 고소득층의 기부금 규모에 유의한 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¹⁷⁷⁾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계층에서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율 감소를 야기하는 인과효과는 없는 반면 저소득 계층에서는 공제제도 전환이 기부율 증가를 야기하는 인과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 기부 의향 및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60%이고 제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자 중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자가 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소득원천에 따른 차별적 조세지원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세액공제 적용자는 기부금에 대해 15% 또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에 따라 세부담 감소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기부에 대해 4,6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소득자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조세지원 효과가 커짐¹⁷⁸⁾
 -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40%, 2018년에는 42%, 2021년에는 45%로 인상되었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짐으로써 조세감면 차이는 더 커진 상황임

176)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3, p. 57.

177)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2016, p. 111.

178)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표 IV-10〉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감면세액 비교

(단위: %, 만원)

과세표준 구간	적용세율	기부금	소득공제 감면세액(A)	세액공제 감면세액(B)	차액 (B-A)
1,200만원 이하	6	100	6	15	9
1,200만~4,600만원	15	100	15	15	0
4,600만~8,800만원	24	100	24	15	-9
8,800만~1.5억원	35	100	35	15	-20
1.5억~3억원	38	100	38	15	-23
3억~5억원	40	100	40	15	-25
5억~10억원	42	100	42	15	-27
10억원 초과	45	100	45	15	-30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조사대상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소득원천에 따라 차별적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는 없음
- 일본의 경우 일부 기부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음
 - 과세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 이하인 납세자는 15%, 29%의 2단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만 과세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15%, 33%, 29%의 3단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에 대해 소득공제, 프랑스와 캐나다는 세액공제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동일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기부금 조세혜택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납세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세액공제율에 추가적인 공제율을 신설하는 방안은 소득원천 간 세제혜택의 차이를 줄이고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출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¹⁷⁹⁾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므로 기업회계 존중원칙에 의하여 손금산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¹⁸⁰⁾
 - 다만 공익성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지만 사회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¹⁸¹⁾
 -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¹⁸²⁾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¹⁸³⁾¹⁸⁴⁾

179) 2013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으로서 사업 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하였음(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8항)

18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15190] 검토보고서』, 2015.

18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182)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18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73조 제1항 제4호

184) 201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이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¹⁸⁵⁾

□ <표 IV-11>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유형별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신고 유형에 따라 세제상 취급을 달리함으로써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표 IV-11>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유형별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 비교

기부금 종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공제방법		필요경비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세액공제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 ¹⁾		
세액공제액		해당 없음	· 1천만원 이하분: 기부금액의 15% ·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의 30%	

주: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text{소득금액} \times 10\% + \text{Min}[\text{소득금액} \times 20\%, \text{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85)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조사대상국을 보더라도 사업소득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 항목별로 소득공제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¹⁸⁶⁾
- 미국은 조정총소득에서 항목별 공제로 소득공제하여 과세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¹⁸⁷⁾
 - 일본은 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 총소득금액(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 외의 자와 동일하게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또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¹⁸⁸⁾
 -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사회보험료공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등과 함께 공제됨
 - 프랑스와 캐나다는 개인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프랑스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회사 내·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영행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¹⁸⁹⁾
 - 캐나다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사업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⁹⁰⁾

18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3.

187) 미국 국세청, “Itemized Deductions,” <https://www.irs.gov/pub/irs-pdf/f1040sa.pdf>,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https://www.irs.gov/pub/irs-pdf/f1120.pdf>, 검색일자: 2021. 7. 23.

188)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일본 「법인세법」 제37조

18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p. 454; CGI 제238조

190) 캐나다 국세청, “Expenses section of Form T2125,”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ompleting-form-t2125/expenses-section-form-t2125.html>, 검색일자: 2021. 7. 23.; “T2 Corporation - Income Tax Guid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3-page-3-t2-return.html#P2663_188344, 검색일자: 2021. 7. 23.

〈표 IV-12〉 주요국의 개인 및 법인기부금 공제방법 비교

구분	개인			법인사업자
	사업소득자 외	사업소득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제방법	
한국	세액공제	인정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필요경비 ¹⁾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세액공제 ·사업소득+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자: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선택 적용	손금산입 ¹⁾
미국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손금산입
일본	소득공제	불인정	소득공제	손금산입
프랑스	세액공제	불인정	세액공제	세액공제
캐나다	세액공제	불인정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 1) 필요경비와 손금산입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소득공제방식에 해당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따라서 개인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바,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보다는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한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차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국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¹⁹¹⁾

191) 「소득세법」 제27조

- 반면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¹⁹²⁾
- 그러나 동 방안은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간 신고 유형에 따라 세제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인한 과세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소득자와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이 침해되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둘째,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법을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적용방식을 개인의 소득세 신고 유형 및 소득 원천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자 간 및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조사대상국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사업소득 이외의 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부금 공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나.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 관련 규정 개선

- 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제한 없이 현물기부도 기부금 조세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기부자의 기부가액 평가와 기부받는 단체의 기부물품 취득원가를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의 현물기부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두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기부가액을 평가하고¹⁹³⁾ 법인은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가 아닌 지정기부금은 장부가, 특수관계가 있는 지정기부금은 장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¹⁹⁴⁾
 - 법인의 기부가액 평가는 종전에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 지정기부금과 비지정

192) 「법인세법」 제19조

193) 개인의 기부가액 평가는 종전에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 지정기부금은 장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가액을 달리 평가하였으나 2020년 2월 11일 개정으로 동일하게 일치시켰음

194)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기부금은 시가로 평가하였으나 2011년 개정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로 통일하되,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음¹⁹⁵⁾

- 한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현물자산은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¹⁹⁶⁾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⁹⁷⁾
 -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V-13〉 현물기부의 기부가액 평가 관련 규정

구분		세법	
		기부자의 기부가액 ¹⁾	기부받는 단체의 취득가액 ²⁾
개인	법정기부금	기부 당시 Max[시가, 장부가]	기부 당시의 시가
	지정기부금	기부 당시 Max[시가, 장부가]	·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받은 기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 ³⁾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기부: 기부 당시의 시가
법인	법정기부금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	기부 당시의 시가
	지정기부금	·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기부: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 · 특수관계인에게 기부: 기부자의 기부 당시 Max[시가, 장부가]	·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받은 기부: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기부: 기부 당시의 시가

주: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동법 시행령 제2항 제7호
 3)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에 한함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5) 이러한 개정은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도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하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증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임(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 p. 198)

196)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만 해당)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19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동법 시행령 동조 제7호.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 기부자의 기부가액 평가 및 기부받는 단체의 취득가액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현물기부의 경우 시가 또는 장부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알 수 없고 납세자가 입증하기도 어려움
 - 기부자의 기부가액과 수령단체의 취득가액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물기부를 처리하는 데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기부가액을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가 현저하게 낮은 자산의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발급되므로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큰 금액의 기부금 공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인으로부터 시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단체의 자산 취득가는 기부 당시 기부자의 장부가로 규정하고 있어 받은 즉시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함
 - 즉 법인기부자가 취득 후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부받은 단체가 부담하게 됨
 -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지정기부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취득가액, 즉 시가로 해석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은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016년 개인이 공익법인에 상장주식을 기부하고 취득 시점의 시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현물의 장부가를 기부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음¹⁹⁸⁾
 - 다만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장부가액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과 세법 규정의

198) 텍스넷, 「현물기부와 관련된 법령상 쟁점과 사례분석」,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9032&sCheck=1, 검색일자: 2021. 9. 13.

명확화 그리고 기부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물기부에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국 중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세법상 규정은 아니지만 납세협력 자료를 통해 기부물품별로 기부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은 일반적인 원칙은 시가이지만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자산 유형별로 시가와 장부가를 허용함
 - 일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¹⁹⁹⁾
 - 캐나다는 가치가 하락한 자산은 시가이고,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원가와 시가 범위에서 납세자가 정할 수 있음

다. 법인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

- 개인 및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총규모는 지난 2010년 이후로 연평균 3.6%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조 57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개인 및 법인의 GDP 대비 기부금 지출 규모는 2010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II-4〉, [그림 II-1] 참조)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본 기부금 총규모는 2018년 14조 570억원으로, 이 중 개인기부금이 62.4%인 8조 7,694억원, 법인기부금이 37.6%인 5조 2,876억원을 기록하였음
 - 법인기부금 지출금액은 2010~2018년 동안 연평균 3.3%씩 증가하였으나 2018년 GDP 대비 기부금 지출 규모는 0.28%로, 2010년 0.31% 대비 0.03%p 감소하였음
 - 한편 개인기부금 지출금액은 2010~2018년 동안 연평균 3.8%씩 증가하였으나 2018년 GDP 대비 기부금 지출 규모는 0.46%로, 2010년 0.49% 대비 0.03%p 감소하였음

199) 일본의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시가에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의 기부행위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²⁰⁰⁾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부활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기업보다 개인의 기부가 민간기부를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²⁰¹⁾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를 보더라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술·예술·복지 단체에 대한 기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과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0.5%로 조사대상 24개국 중 5위로 나타남([그림 II-2] 참조)
 -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는 미국이 1.44%로 가장 높으며, 24개 조사대상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중 평균은 0.31% 수준임
 - 미국은 개인기부금 비중이 79%²⁰²⁾로 개인 중심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기부는 2019년 기준 2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²⁰³⁾
 -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개인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규모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부금 총공제세액 9,883억원 중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세액 규모는 6,483억원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II-3] 참조)
 - 반면 법정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비중은 각각 4.8%와 27.7%로 32.5% 수준에 불과함

200) 2000년도 이전에는 국가·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개정을 통하여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201)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p. 21.

202) 개인에 의한 기부 69%, 유증에 의한 기부 10%를 합한 수치임

203) Giving USA, "Giving USA 2020," <https://givingusa.org/giving-usa-2020-charitable-giving-showed-solid-growth-climbing-to-449-64-billion-in-2019-one-of-the-highest-years-for-giving-on-record/>, 검색일자: 2021. 7. 23.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술·예술·복지단체에 대한 민간영역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요국의 사례 및 조세지출 규모 등 다양한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지출하는 법정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10%(사회적기업 20%)를 한도로 각각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정·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먼저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기부금에 대하여 조사대상국 중 미국은 최근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일본은 공익성이 높은 단체, 프랑스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현물기부 시 공제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음²⁰⁴⁾
 - 미국은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의해 법인이 2020년 공공 자선단체(public charity)에 지출한 적격 현금기부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10%에서 25%까지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였음
 - 일본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공익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20년 「재정법」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서비스 및 재화²⁰⁵⁾를 제공하는 경우 기부 규모와 관계없이 6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204) 캐나다는 적격 현금기부 시 순소득의 75%를 공제한도로 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205) 의료 및 준의료서비스, 가구, 소형 및 대형 가전제품, 급식 영유아용 재료, 욕실 및 보육장비 등,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설계된 장비 등

- 한편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7,748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 대비 1.6%로, 2006~2014년 동안에는 2%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5년 이후로는 감소하여 1.5% 전후 수준을 보이고 있음²⁰⁶⁾
 - 이는 법정기부금 한도가 75%에서 50%로 축소하기 전인 2009년 6,398억원, 2.1% 대비 0.5%p 감소한 수준이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5%에서 10%로 확대된 2011년 8,421억원, 2.8% 대비 1.2%p 감소한 수준임²⁰⁷⁾

- 따라서 지난 10년간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지출 규모 현황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사례, 조세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법인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인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긴 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2019년도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바 있음

- 그러나 기부금은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되어 기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손금산입에 따른 세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한도 및 한시적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경제적 분석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⁰⁸⁾

- 특히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의 효과가 기부금 지출 여력이 있는 대규모법인에 집중될 수 있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206) 참고로 개인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9,972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 대비 2.0%로, 2011년에는 3.0%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2.0~2.3%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7) 2005년 이전에는 법정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한 바 있음

208) 김진수, 「기업의 기부활동과 조세정책」, 『재정포럼』 제11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p. 62.

- 우리나라에서 자산 규모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기부금 지출금액은 2018년도 3조 9,213억원으로 전체 기부금 지출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2018년도 8,116억원으로 전체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약 62.8%를 차지하고 있음(〈표 II-14〉 참조)

- 또한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에 따르면, 주주-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재산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조세지원 정책 운용 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²⁰⁹⁾
 - 기업기부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기부행위가 조세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
 - 안숙찬(2002)은 1990년과 1997년의 기부금 관련 세법 개정이 기업의 기부금 지출실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 관련 세법 개정은 기부금 지출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음
 - 손원익·박태규(2008)는 기업의 기부 동기 및 세제의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법인기부금 규모와 손금산입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²¹⁰⁾ 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인 비용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찬표·강윤식(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209)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는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와 이윤극대화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10) CSR이란 학자나 단체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던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와 환경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https://www.smes.go.kr/csr/user/info/define.do>, 검색일자: 2021. 7. 28.)

확대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법인기부를 유도하더라도 과도한 세제혜택 및 주주-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비지배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장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²¹¹⁾ 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이하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²¹²⁾를 의무화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도 확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최근 ESG 관련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 등이 이를 활용하여 책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²¹³⁾
 - 이러한 면에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부금 한도 확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ESG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방안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및 공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만 인상해주는 것이므로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기부세제하에서는 기부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법정 및 지정기부금으로

21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로, 2019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은 2022년에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임(삼일회계법인, 『201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acc/samil-acc-accg_vol7_chapter1.pdf, 검색일자: 2021. 7. 30.)

21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란 환경 관련 기회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 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로, 2025년 이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기업, 2030년 이후에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1. 1. 14)

2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기업은 약 100개사이나, 20개의 기업만 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1. 1. 14; p. 15.)

나누어 그 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기부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한도 수준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기부금 공제체계의 기본구조와 상충되고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²¹⁴⁾

214) 다만 최근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한도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적용한 바 있음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찬표·강윤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제40권 제5호, 2011, PP. 713~748.
- 권성준·송은주·김효림, 『개인기부 관련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15190) 검토보고서』, 201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1. 1. 14.
-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
- _____,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3.
- _____,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진수, 「기업의 기부활동과 조세정책」, 『재정포럼』, 제11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PP. 56~83.
-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삼일회계법인, 『201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2019.
-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안숙찬, 「세법개정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행태」, 『사회과학연구』, 제8권, 2002., pp. 177~194.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이준봉,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2020.
허은영·김나리·김소영·송재환·정명주·한효,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Charities Aid Foundation, *Gross Domestic Philanthropy: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GDP*, 2016.

IBFD, “Taxation of Charities,” 2015.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20.

IRS, Publication 561, “Determining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2020.

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2019.

IRS,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2020.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2020.

한국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한국 국세청, <https://www.nts.go.kr/>

한국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한국 중소기업벤처부, <https://www.smes.go.kr/>

한국 텍스넷, <http://m.taxnet.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미국 AICPA, <https://www.thetaxadviser.com/>

미국 Council of Foundation, <https://www.cof.org/>

미국, Giving USA, <https://givingusa.org/>

미국 Journal of Accountancy,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

미국 PWC, <https://taxsummaries.pwc.com/>

미국 Stanford Giving, <https://giving.stanford.edu/>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기업경영지원 사이트, <https://www.smbc-card.com/>

일본 문화청, <https://www.bunka.go.jp/>

일본 법령정보시스템, <https://elaws.e-gov.go.jp/>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

캐나다 법령정보시스템, <https://laws-lois.justice.gc.ca/>

캐나다 H&R BLOCK, <https://help.hrblockonline.ca/>

프랑스 Code général des impôts,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Roche & Cie, <https://www.cabinet-roche.com/>

프랑스 bofip.impots.gouv.fr, <https://bofip.impots.gouv.fr/>

프랑스 Le One Stop - Financial & Juridique, <https://preprod.impulsa.fr/>

IBFD, <https://ibfd.org/>

세법연구 21-02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

발 행 2021년 9월 30일
저 자 권성준·송은주·허운영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쇄 디자인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77-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